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개선방안 연구

기능개편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개선방안 연구

기능개편을 중심으로



연구진

김필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읍동의 재편 혹은 확대 방안 도출 필요
 - 책임읍동의 일부 실시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 단층제 행정체계에 따라 본청에 업무 과부하
 - 책임읍동의 부분적인 실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 연구의 목적

-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세종시 하부 행정계층구조 재정립
 - 자치분권 여건 변화와 읍면동의 자치행정 환경 변화
 - 세종시 읍면동 주민센터 정책목표의 설정
 -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하부행정계층구조 마련
-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읍면동 모델 개발
 - 단층제 행정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읍면동 기능 재설계
 - 세종시 전지역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역 조정

2. 책임읍동 기능개편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기능배분의 주요 기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집행기능 중심의 기능배분
- 주민편의를 배려한 대민 행정 서비스 집행기능 중심의 기능배분
- 지역의 주요 산업(농축산 등)을 고려한 기능배분

□ 기능배분의 주요 변화

- 책임읍은 총 263개 기능 중 213개 기능은 현행 조치원읍의 수행 기능
 - 문화체육분야의 기능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능을 신규기능으로 함
 - 신규기능 중 사회복지 분야 기능은 경로당 소모물품 지원 기능으로 현재 수행중인 기능일 것으로 추정됨
 - 환원기능은 건설도시 분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기능으로 허가기능은 본청에서 일관된 법령기준을 적용하여 일괄 소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읍·면·동은 현장확인, 신고접수 등을 수행함
-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하는 기능(6개 기능)
 - 건축허가(6층이하, 연면적 2,000㎡ 이하)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 책임동과 책임읍의 기능배분 차이

- 건설도시분야 기능배분 차이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건축물대장 생성, 분리결합, 재작성, 전환, 합병, 표시변경 및 정정, 소유자 정정, 건축물 지번(도로명주소 등) 변경, 말소, 등기축탁, 등·초본 발급 등
- 산업경제분야 기능배분 차이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
 - 축산농가 재해조사, 축산업 정기점검 및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 건축신고(취소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3. 책임읍동 구역 재설정방안

□ 1안: 3개 책임읍동

조치원읍 (책임읍)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아름동 (책임동)	고은동, 중촌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 가람동, 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동, 해밀동, 장군면, 연기면
집현동 (책임동)	반곡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합강동, 다솜리, 옹호리,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 2안: 4개 책임읍동

조치원읍 (책임읍)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아름동 (책임동)	고은동, 중촌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 가람동, 세종리, 장군면
보람동 (책임동)	반곡동, 대평동, 집현동, 소담동, 금남면
다솜동 (책임동)	합강동, 옹호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동, 해밀동, 장군면, 연기면, 부강면

4. 향후 연구과제

□ 연구의 한계

- 당초 연구 목표와 범위를 책임읍동의 확대 개편에 맞추었음
 - 행정 효율성의 확보 측면에서 책임읍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책임읍동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읍면동 모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환경 요인 등을 반영한 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부족함
 - 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라는 특성상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
 - 읍면동의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인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

-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읍면동 현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미흡함
 -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읍면동 공무원과의 인터뷰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기능과 관련된 조사표 조사만을 실시함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연구의 목표와 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함
 - 책임읍동제의 확대 개편 뿐만 아니라 책임읍동제의 폐지도 고려하여야 함
 - 행정효율, 주민편의,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주민 화합과 공동체성,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 읍면동제의 도입, 행정구의 설치 등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 국가의 지방자치 정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세종시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
 -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직접 대민행정서비스를 주관하고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읍면동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 중심 기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세종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시대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세종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주민참여의식 수준의 향상,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의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중심 일선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함

제1장 |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체계 6

제2장 |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 논의

제1절 이론적 논의 11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11

 2. 일선관료제 13

제2절 현황분석 18

 1. 법·제도 현황 18

 2. 읍·면·동 행정체제 변화동향 22

 3. 1990년대 읍면동 기능전환 46

제3절 책임읍면동 49

 1. 책임읍면동 제도현황 49

 2.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현황 60

제3장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기능배분 분석

제1절 연구설계 83

 1. 기능배분 원칙 83

 2. 기능배분 기준 84

3. 기능배분 방법	86
제2절 조사설계	88
1. 조사설계	88
2. 조사도구	88

제4장 | 분석결과

제1절 기능분석	103
1. 전문가 워크숍 결과	103
2. 조사표 조사결과	106

제5장 | 결론

제1절 기능배분	241
제2절 행정구역재설계	266
1. 구역재설계 원칙	266
2. 구역재설계	26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273

【참고문헌】	275
---------------------	------------

〈표 2-1〉 법정동과 행정동의 비교	25
〈표 2-2〉 읍면동 사무의 법령근거	28
〈표 2-3〉 법령상 읍면동 사무	29
〈표 2-4〉 기능전환 전 하부행정기구(읍면동) 사무	46
〈표 2-5〉 1990년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동의 주요기능	47
〈표 2-6〉 책임읍면동 배분 기능 유형	53
〈표 2-7〉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62
〈표 2-8〉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70
〈표 2-9〉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조치원읍장에게만 위임하는 사무	77
〈표 2-10〉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아름동장에게만 위임하는 사무	80
〈표 3-1〉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읍동에 대한 위임사무 별 타당성 조사표	89
〈표 4-1〉 책임동의 기능 재배분: 전문가 의견수렴 안	103
〈표 4-2〉 책임동의 주민생활 밀접 기능 재배분	104
〈표 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등록면허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결정 ..	106
〈표 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결정	107
〈표 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107
〈표 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108
〈표 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108
〈표 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09
〈표 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109
〈표 4-1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외국인 토지 관리	110
〈표 4-1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계약서 검인	110
〈표 4-1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111
〈표 4-1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111
〈표 4-1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112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4-1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112
〈표 4-1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113
〈표 4-1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113
〈표 4-1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114
〈표 4-1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	114
〈표 4-2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115
〈표 4-2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115
〈표 4-2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6
〈표 4-2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116
〈표 4-2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117
〈표 4-2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117
〈표 4-2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118
〈표 4-2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118
〈표 4-2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119
〈표 4-2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119
〈표 4-3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120
〈표 4-3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불법건축물 현장계도	120
〈표 4-3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불법건축물 발생보고	121
〈표 4-3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	121
〈표 4-3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122
〈표 4-3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122
〈표 4-3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23
〈표 4-3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123
〈표 4-3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철거 신고	124
〈표 4-3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멸실 신고	124
〈표 4-4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작물 축조 신고	125
〈표 4-4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125

〈표 4-4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126
〈표 4-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126
〈표 4-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127
〈표 4-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127
〈표 4-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128
〈표 4-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128
〈표 4-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129
〈표 4-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표시 변경	129
〈표 4-5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표시 정정	130
〈표 4-5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소유자 변경	130
〈표 4-5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소유자 정정	131
〈표 4-5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지번 변경	131
〈표 4-5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지번 정정	132
〈표 4-5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132
〈표 4-5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133
〈표 4-5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133
〈표 4-5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134
〈표 4-5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축탁	134
〈표 4-6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135
〈표 4-6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135
〈표 4-6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136
〈표 4-6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136
〈표 4-6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137
〈표 4-6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137
〈표 4-6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도로점용 허가	138
〈표 4-6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도로점용 준공	138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4-6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139
〈표 4-6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139
〈표 4-7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140
〈표 4-7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140
〈표 4-7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141
〈표 4-7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141
〈표 4-7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142
〈표 4-7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142
〈표 4-7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143
〈표 4-7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143
〈표 4-7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144
〈표 4-7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44
〈표 4-8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145
〈표 4-8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145
〈표 4-8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146
〈표 4-8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146
〈표 4-8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147
〈표 4-8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147
〈표 4-8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148
〈표 4-8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주정차 이동단속	148
〈표 4-8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149
〈표 4-8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149
〈표 4-9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환경관리원 관리	150
〈표 4-9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150
〈표 4-9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151
〈표 4-9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151

〈표 4-9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152
〈표 4-9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152
〈표 4-9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등 허가	153
〈표 4-9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등 승계(폐업)	153
〈표 4-9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사후관리	154
〈표 4-9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과징금 부과 징수	154
〈표 4-10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폐쇄	155
〈표 4-10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노래연습장업 등록	155
〈표 4-10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노래연습장업 변경, 승계, 폐업	156
〈표 4-10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노래연습장업 과징금·과태료	156
〈표 4-10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상영신고	157
〈표 4-10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57
〈표 4-10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승계 및 폐업	158
〈표 4-10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158
〈표 4-10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출판사 신고	159
〈표 4-10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불법간행물 수거·폐기	159
〈표 4-11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과태료 부과 징수	160
〈표 4-11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인쇄사 신고	160
〈표 4-11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인쇄사 신고필증	161
〈표 4-11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인쇄사의 과태료	161
〈표 4-11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등록 및 등록취소, 양수도 등	162
〈표 4-11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보험가입	162
〈표 4-11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여행계약	163
〈표 4-11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폐쇄	163
〈표 4-11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검사	164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4-11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과태료	164
〈표 4-12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안전모니터봉사단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165
〈표 4-12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165
〈표 4-12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166
〈표 4-12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166
〈표 4-12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167
〈표 4-12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167
〈표 4-12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68
〈표 4-12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168
〈표 4-12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소비유통단계)	169
〈표 4-12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169
〈표 4-13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 등의 수거·검사	170
〈표 4-13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170
〈표 4-13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171
〈표 4-13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171
〈표 4-13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의 승계	172
〈표 4-13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172
〈표 4-13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173
〈표 4-13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173
〈표 4-13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174
〈표 4-13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174
〈표 4-14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175
〈표 4-14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175
〈표 4-14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이·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176

〈표 4-1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176
〈표 4-1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177
〈표 4-1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177
〈표 4-1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178
〈표 4-1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178
〈표 4-1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179
〈표 4-1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180
〈표 4-15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180
〈표 4-15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181
〈표 4-15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181
〈표 4-15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182
〈표 4-15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182
〈표 4-15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183
〈표 4-15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183
〈표 4-15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184
〈표 4-15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184
〈표 4-15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185
〈표 4-16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185
〈표 4-16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186
〈표 4-16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186
〈표 4-16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187
〈표 4-16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187
〈표 4-16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188
〈표 4-16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188
〈표 4-16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189
〈표 4-16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189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4-16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결정 및 통지	190
〈표 4-17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아이돌봄 지원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190
〈표 4-17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191
〈표 4-17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191
〈표 4-17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192
〈표 4-17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192
〈표 4-17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193
〈표 4-17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193
〈표 4-17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194
〈표 4-17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194
〈표 4-17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설치 신고	195
〈표 4-18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폐·휴지 신고	195
〈표 4-18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변경 신고	196
〈표 4-18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196
〈표 4-18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197
〈표 4-18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97
〈표 4-18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198
〈표 4-18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198
〈표 4-18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초연금 지원	199
〈표 4-18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199
〈표 4-18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200
〈표 4-19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200
〈표 4-19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201
〈표 4-19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아동) 수당 지원	201
〈표 4-19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연금 지원	202

〈표 4-19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202
〈표 4-19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	203
〈표 4-19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연간 협력 총괄	203
〈표 4-19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204
〈표 4-19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204
〈표 4-19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합사례관리	205
〈표 4-20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205
〈표 4-20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206
〈표 4-20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의 지정	207
〈표 4-20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207
〈표 4-20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208
〈표 4-20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208
〈표 4-20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 징수	209
〈표 4-20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209
〈표 4-20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210
〈표 4-20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210
〈표 4-21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211
〈표 4-21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211
〈표 4-21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212
〈표 4-21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212
〈표 4-21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213
〈표 4-21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213
〈표 4-21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14

〈표 4-21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214
〈표 4-21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215
〈표 4-21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15
〈표 4-22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216
〈표 4-22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216
〈표 4-22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217
〈표 4-22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17
〈표 4-22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218
〈표 4-22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화장실 설치	218
〈표 4-22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	219
〈표 4-22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219
〈표 4-22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220
〈표 4-22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등	220
〈표 4-23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221
〈표 4-23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	221
〈표 4-23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농가 재해 조사	222
〈표 4-23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222
〈표 4-23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	223
〈표 4-23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223
〈표 4-23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유기동물 신고 접수	224
〈표 4-23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224
〈표 4-23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225
〈표 4-23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취소	225
〈표 4-24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226
〈표 4-24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측정	226
〈표 4-24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227

〈표 4-2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확인	227
〈표 4-2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개선명령	228
〈표 4-2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조업정지명령	228
〈표 4-2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229
〈표 4-2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규제	229
〈표 4-2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과태료 부과 징수	230
〈표 4-2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230
〈표 4-25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승계	231
〈표 4-25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 불법행위 단속	231
〈표 4-25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232
〈표 4-25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232
〈표 4-25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233
〈표 4-25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233
〈표 4-25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설폐기물 배출자 과태료 부과 징수	234
〈표 4-25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및 폐업	234
〈표 4-25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235
〈표 4-25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체 재해조사	235
〈표 4-26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	236
〈표 4-26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장(변경)등록(취소)	236
〈표 4-26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체 일제조사	237
〈표 4-26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현장방문	237
〈표 4-26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애로관리	238
〈표 4-26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사후관리	238
〈표 5-1〉 책임음·동 기능배분변화 현황	242
〈표 5-2〉 책임동 특화사무	245
〈표 5-3〉 책임음 특화사무	256

그림목차 |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도	19
〈그림 2-2〉 하부행정기관의 정책변화	24
〈그림 2-3〉 행정면 모형	51
〈그림 2-4〉 대응동 모형	51
〈그림 2-5〉 책임읍면동제 모델	58
〈그림 5-1〉 세종특별자치시 구역개편 대안 1	270
〈그림 5-2〉 세종특별자치시 구역개편 대안 2	272

제1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 지방자치체제의 시범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의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체제에 관한 제도실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 지방행정체제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로써, 주민 참여와 행정의 민주성 및 대응성의 차원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여 읍면동 자치혁신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책임읍면동제를 통해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극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동 체제의 불일치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및 단층제 행정체제에 따른 본청 업무의 과부하 발생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책임읍면동제를 통해 시민주권의 확보와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바,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가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읍·동 모델 개발
 - 단층제 행정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즉,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층제 행정체제의 행정비효율성의 해소를 위한 읍·동 기능의 재설계 및 주민센터 정책목표의 설정임

- 현행 책임읍동제의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과 행정효율 제고
 - 책임읍동의 부분적인 실시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 책임읍동의 재편 또는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및 책임읍동 체제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기준시점은 2021년 3월 31일임
 - 법령의 적용 기준시점으로 2021년 3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조례 및 규칙, 그리고 예규, 지침, 훈령 등임
 - 통계자료 등의 기준시점으로 2021년 3월 31일 현재, 공식적으로 공표된 통계자료를 적용하되, 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통계를 활용함
 - 통계자료 등의 활용에서 통시적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기준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간의 통계를 적용함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하부행정조직(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함
- 둘째, 세종시 책임읍면동제 추진의 현황과 적정성을 분석함
- 셋째,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하부행정기구 설치·운영의 행정 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경계 범위 내임
 -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경계 내에 소재한 읍·동임
 - 단, 사례연구 등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경계를 넘어설 수 있음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정부의 읍면동 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분석: 책임읍면동제,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사업 등
- 선행연구 검토
- 세종시 행정 수요조사
-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사례: 부천시

□ 실증조사분석

- 조사표조사: 세종시 본청과 책임읍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표 조사 실시

□ 심층면접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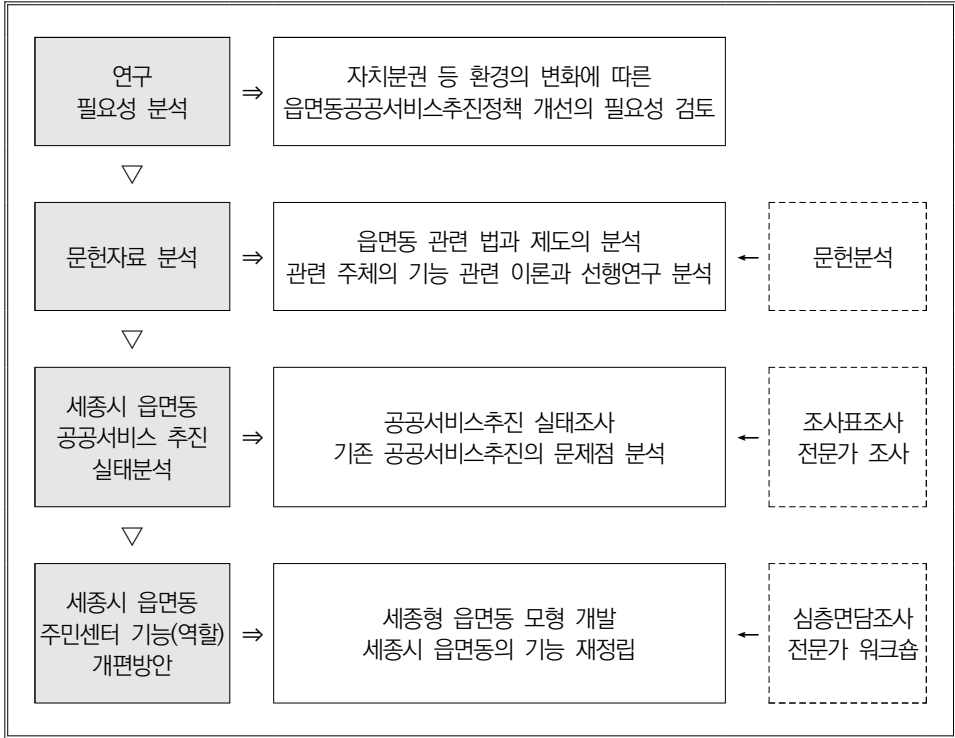
- 전문가 조사
 -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관련 연구자, 활동가 등 전문가 중심의 워크숍 추진

3. 연구의 체계

□ 연구추진체계

-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 및 적정 분석방법의 활용
 - 전체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각 연구분야별 적정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2장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 논의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현황분석

제3절 책임읍면동

제1절 이론적 논의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가. 공공서비스의 정의

□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비영리의 재화 및 서비스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 사용됨
- 공공서비스는 공공재로서 공공기관을 통해 비영리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함
 -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불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짐
 -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주민편익을 강조하여 정책적으로 외부효과를 시장에 투입하는 공공서비스임
 -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활동이며,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을 결정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성격을 가짐
-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서비스이며,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임
 - 송건섭(2004: 528)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안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이재필·이시경(2009:3)은 정부활동의 일종으로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주민의 욕구와 필요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제공하는 유형·무형의 용역으로 정의함

나. 공공서비스의 의의

□ 정부의 활동

- Jones(1981)은 어떠한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공서비스로 정의함
- Roth(1987)은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서비스로 공공서비스를 정의하고, 공공의 재화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공서비스를 설명함

□ 정부의 존재이유로서 공공서비스 공급

- 문신용·윤기찬(2007)은 공공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정부가 사회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종합적인 활동으로 공공서비스를 정의하여 공급주체가 정부인 서비스와 공급주체가 민간인 서비스를 구분함
- 김선희·김현준·김나연(2020)은 정부활동의 산출물로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공공서비스의 관계를 설명함

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체계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임
- 한승주·최홍석(2015)에 따르면, 공공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도달하기까지 포괄적 관련자들의 종합적 관계와 역할분담의 관계임

□ 생산자와 공급자의 연결체계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결 체계로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함
- 박용성·홍길표·이병철(2020; 재인용 허만형, 2012)은 통상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 사이의 연결망,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관들 간 서비스 전달망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틀로 설명함
- Friedlander & Apte(1980)은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일련의 망(network)으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회복지 기관의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로 정의함

2. 일선관료제

가. 일선관료제의 개요

□ 일선관료제의 의의

- Lipsky(1980)은 정책집행단위에서 정책의 다양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 정부가 제시한 이념과 실체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구현됨을 강조
 - Lipsky(1980: 13-25)는 일선관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량(discretion)과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형성(policy making)까지 하는 것으로 주장함
- 일선관료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있어 시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수행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보유함
 - 정부 및 조직의 상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는 일선관료를 단순한 정책과정의 말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책의 주된 행위자로 인식
 - 일선관료는 문서를 처리하는 것보다 시민과의 대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을 핵심임무로 인식함

- 일선관료의 업무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즉각성(immediacy)이 있고,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Lipsky, 1980:4-12)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 결과적으로, 일선관료는 현장에서 직무와 관련한 결정을 수행하며, 그 결정은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일선관료는 시민과 국가사이에 중재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일선관료제의 직무상 특성(Lipsky, 1980; 유훈, 2007¹⁾)

- 일선관료제 이론의 핵심은 일선관료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결정됨
 - Davis(1970)는 재량이 해당 관료에게 주어진 권한의 유효한 한계 내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가능한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 (free to make choice)를 갖는 것으로 정의함
 - 재량은 관료가 가지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며, 재량행위는 이것이 행동화된 것이며, 재량권은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임(Davis, 1970)
 - 일선관료는 다른 조직의 조직구성원과 다르게, 행정서비스 대상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그 성격과 양, 그리고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재량권이 행사됨(Lipsky²⁾, 1980)
 - 다만, 일선관료가 법률·규칙 등의 조직규범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과 상위조직의 지휘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령 및 규칙 등이 모든 업무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시민의 요구에 대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에 신축적인 대응을 위해 재량권이 행사됨
- 서비스 대상인 국민 개인이나, 집단과 많은 시간을 접촉함
 - 민원, 상담, 복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업

1) 유훈(2007) 정책집행론, 서울: 대영문화사

2) Lipsky, 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 N. Y.: Russell Sage Foundation

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시민과의 상호작용이 일선관료의 직무임
 - 시민의 요청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일선관료의 핵심적인 직무임
- 일선관료의 직무는 예측불가능한 특성이 강함
 - 시민과의 응대과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요구가 제시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추측하기 어려움

나. 일선관료의 직무수행 속성

□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 일선관료들의 직무환경은 일선관료의 집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과 재량권을 갖는 일선관료는 정책대상집단과의 연속되는 상호작용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 하에 놓여짐
- 일선관료의 대표적인 직무환경은 직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항상 불충분하다는 것(inadequate resource)임
 -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인력 등의 조직적 차원의 자원들과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과 자원 등의 자원들은 항상 불충분하여, 일선관료들은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정책집행을 수행함
- 일선관료의 직무환경은 물리적 위협, 심리적 불안, 관료적 권위에 대한 도전에 직면 등이 상존하는 환경임
- 일선관료의 직무환경은 업무성과에 대한 기대의 모호성과 모순(ambiguous and contradictory expectation)임
 - 일선관료는 시민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목표와 개별 집행현장의 상황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모순된 기대가 형성되며, 일선관료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커지게 됨

□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적응

- 전술한 바와 같은 일선관료의 직무환경에 일선관료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적응 매커니즘으로서 정형화의 방법을 사용함
 - 일선관료의 직무환경 즉 정책집행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료는 단순화와 정형화를 적용함
 - 단순화는 복잡한 환경을 자신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조화하여 인지하고, 절차나 요건 등의 임의적인 도구를 통해 직무를 간소화 함
 - 즉, 일선관료는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을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패턴화함으로써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정형적으로 직무를 수행함
- 단순화와 정형화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써 지름길, 단순화, 재정의 등의 방법을 적용함
 - 일반적으로, 일선관료는 불충분한 자원에 대처하기 위해 지름길(shortcut)을 선택함으로써 신속한 결정, 갈등의 회피, 심리적 불안해소 등을 추구함
 - 또, 물리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군을 사전에 정의하여 의사결정을 단순화 시킴
 - 모호하고 모순된 기대에 대처하기 위해 역할기대를 재정의하며, 고객집단도 재정의 함

□ 탈규제와 권한위임으로서의 일선관료제

- 일반적인 정부혁신의 방향은 권한을 조직의 하위단위로 위임하는 추세임
- Peters³⁾(1996)은 1980년대 이후의 다양한 정부혁신을 모형화하여(탈규제적 모형: Deregulated Government), 일선관료에게로의 권한위임과 일선관료의 재량권확대의 효과성을 설명함
관료제 및 관료가 규칙에 의해 지나치게 구속될 때 행동이 지연되고, 여러분야에서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함

3) Peters, B. G.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Gronroos⁴⁾(1990)는 권한위임(empowerment)을 시민과 접점에 있는 일선관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함
일반적으로, 권한위임은 상위부서로부터의 공식적인 위임을 의미하나, 일선관료제에서는 실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이상과 같은 접근에서 일선관료제는 하위조직 또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함
 - 일선관료의 업무에 대한 결정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판단의 자율성을 확대함
 - 시민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획득한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용이함

4) Gronroos(1990) Service management and Marketing: Managing the moment of truth in service competit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제2절 현황분석

1. 법·제도 현황

가.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읍·면·동의 개념

□ 하부행정기관의 법률적 규정

- 「지방자치법」은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읍·면·동 등을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함(지방자치법 제108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은 직속기관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지역을 기준으로 설치된 기관만을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함
- 동(洞)은 기본적으로 도시적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자치구에 설치되는 하부행정기관의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동은 읍·면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임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 및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함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음

□ 읍·면·동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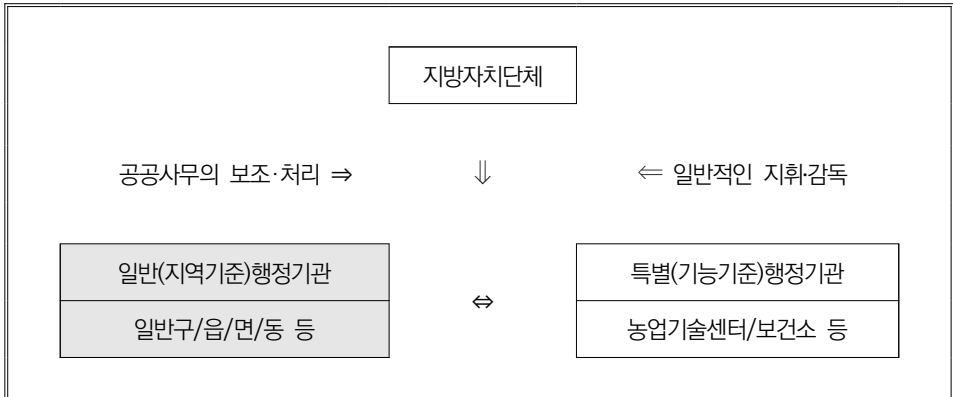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역과 기능을 기준으로 자치권이 없는 구(일반구)와 읍·면·동임
- 현행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행정기관임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

- 적으로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임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음

□ 읍·면·동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역과 기능을 기준으로 자치권이 없는 구(일반구)와 읍·면·동임
- 현행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행정기관임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임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음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도



나. 읍·면·동의 설치·운영 기준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에서의 읍·면·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조례로서 행정등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함(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
 - 읍·면·동은 자치권이 없는 하부행정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읍·면·동의 궁극적인 설치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함(지방자치법 제115조)
 - 동법 시행령은 출장소의 설치요건을 ①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②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③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등으로 제시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1호, 2호, 3호)
 - 다만, 출장소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첫째,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 둘째, 행정동이 설치된 경우 등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읍·면·동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하는 출장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 행정기관의 업무내용에 따라 다수의 행정기관이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단일행정기구에 의한 통합처리보다 행정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편의성을 향상시킴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다수의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함
 - 하부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참여를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클수록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보다 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바, 소규모의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수요와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기 유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함

□ 설치기준

-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일반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함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인 경우, 일반구를 설치함
 -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은 예외적으로 분구 후 평균인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는 본청에 6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를 설치한 시는 본청에 4개 실·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읍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중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인 지역에 설치함(「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 시가지 구성지역내 거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이상이며, 도시적 산업종사가구가 전체가구의 40%이상인 경우 읍을 설치할 수 있음
 - 인구 2만명 미만의 경우에는 군청 소재지의 면 또는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1개 면을 읍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면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면행정 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함
 -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1개의 행정면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동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동으

로 불가피한 경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함

□ 행정구역 조정 시 검토사항

- 행정구역 조정시 법정요건 구비여부, 해당 지역주민의 지지도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함
- 「지방자치법」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분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주민편익은 생활권 일치여부 등에 관한 고려임
 - 지역개발은 개발권역과 합치여부, 개발전망,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를 의미함
 - 지리적 여건은 해당지역의 교통(접근성), 지세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역사적 전통성은 지역의 문화, 풍속, 생업, 지역주민의 화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행·재정적 효과는 하부행정기관의 구역규모의 적정화, 재정능력 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2. 읍·면·동 행정체제 변화동향

가. 읍·면·동 제도변화 연혁

□ 읍·면·동의 역사적 변화

-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로 읍·면·동 구역이 개편되었고, 1945년 미군정 시기에 일본강점기의 구역 명칭이 그대로 승계됨
 - 1906년 ‘면내 동·리·촌의 폐지·분합과 그 명칭에 관한 건’에 근거하여 면으로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을 일원화함

- 1917년 10월 행정구역개편으로 정회를 설치하였으며, 1947년 동회로 변경되었고, 1955년 동 조직이 자치법 상의 말단 행정조직으로 설정됨
 -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와 읍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존재하던 동이 읍·면과 대등한 지위로 놓임
- 1999년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을 문화, 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및 시민교육 등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
- 1999년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는 행정기관의 기초단위로써 수행하던 기능을 시·군·구청으로 이관함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등록,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등 주민생활에서 필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청소, 주택, 교통, 지방세납부 등은 시·군·구청으로 이관함
 - 2000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타목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시·도, 시·군·구의 사무로 지정함
- 현행의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함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그림 2-2〉 하부행정기관의 정책변화



□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

- 법정동은 대한민국 법정구역으로, 법률(관습법)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임
 - 법정동의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법정동은 직접적인 행정기능이 아닌 전통적인 지역구분 및 주소, 지적(地籍) 분야에서 사용되고, 공부상에서만 존재함
 - 법정동은 지역 공동체가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개명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강동구 하일동),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단위의 일부가 다른 상위 행정구역 경계로 편입되면서 설치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음

- 행정동은 법정동을 관할하는 일차적 행정기관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던 후,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함
 - 초기에는 법정동만 존재하였으나, 세분화된 동(법정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법정동을 묶을 필요가 생겨남
 - 기존 동과 구별되는 명칭으로 동회(洞會)를 사용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 동회는 모두 동으로 명칭이 일원화되었음
- 일반적으로 행정동은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함
 - 하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대체로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과 동일하게 정해짐
 - 하나의 법정동을 복수의 행정동이 일부분씩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의 이름은 대체로 해당 법정동의 이름에 숫자를 붙여 구분함
 - 복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의 이름은 비교적 규모나 대표성이 큰 법정동명 하나를 사용하거나, 행정동 관할 내 법정동들 이름의 맨 앞 글자 또는 앞글자와 뒷글자 등을 조합함
 - 하나의 행정동이 어떤 법정동의 일부와 또 다른 법정동의 일부에 걸쳐 관할하기도 함
 - 읍/면을 동으로 전환할 때, 기존 읍/면의 명칭을 따라 정함
 - 행정동의 이름이 반드시 법정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수 있음

〈표 2-1〉 법정동과 행정동의 비교

구분	법정동	행정동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조례
설치 목적	소관 사무의 분장처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
변경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조례제정	조례제정
변경 정도	경직적	탄력적

나. 읍·면·동의 설치기준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은 시·읍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중에 읍의 설치기준을 제시함
 - ‘읍’의 설치기준은 구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명 이상이어야 함
 - 또,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 또는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2만이 되지 않더라도 1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 2호)
- 「지방자치법」은 시·읍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행정입법(시행령)으로 위임함
 - 동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것과 해당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이상일 것 등을 제시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호, 2호)

□ 읍·면·동의 성격

- 전술한 바와 같이, 읍·면·동은 출장소와 동일한 하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동법 동령 동조 동항 1호)와 동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동법 동령 동조 동항 2호)를 동일하게 출장소 설치 제한요건으로 제시한 바, 역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은 출장소와 동일한 하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읍·면·동은 관할구역의 확고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분장된 소관사무가 명확하며, 각 소관사무는 종합성과 계속성을 가짐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제시된 출장소 설

치요건에 준하여 추정하면, 특정한 지리적 경계를 갖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성격이 있음

다. 읍·면·동의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범위 규정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임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제교류 및 협력사무를 포함하여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함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부행정기관인 동을 설치하고, 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제5항)

□ 읍면동의 사무는 총 28개 법령에 근거한 99개 사무임

- 읍면동의 사무는 6개 법률, 9개 대통령령(규정, 시행령), 13개 부령(시행규칙) 등 총 28개 법령에 근거한 99개 사무임
 - 읍면동의 사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민방위 기본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부의 소관법률임
 - 읍면동의 사무를 규정하는 법률 중 행정안전부 소관법률 이외의 법률로는 법무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수

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임

- 이 외의 읍면동의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법의 위임규정에 의한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포함함
 - 읍면동의 사무로 전술한 99개 사무는 28개 개별법령에서 읍·면·동의 사무로 직접 지정한 사무임
 - 읍면동의 사무 중 법령상 위임사무는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 해당법령의 재위임규정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근거하여 읍·면·동장의 사무로 지정하는 체계임

〈표 2-2〉 읍면동 사무의 법령근거

분류	법령명	소관부서	비고
법률	• 민방위 기본법	행정안전부	
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법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대통령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특정지역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수복지역 내 소유지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부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분류	법령명	소관부서	비고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도교통부	
부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부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부령	• 수산지적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부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부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에서 읍면동의 기능으로 직접 지정하는 사무는 다음의 99개 사무임

〈표 2-3〉 법령상 읍면동 사무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출입 허가신청 접수	•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허가 여부 통지	•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열람) 신청 접수 및 발급	•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이하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	•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	•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	•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조건불리지역 알림 및 공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계사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8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자격 유무 확인 및 약정신청서 제출	• 읍·면·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9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알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10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읍·면·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1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사업신청서 제출	•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36조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알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 및 추진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3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발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발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인이 발농업에 종사하는지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4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발농업에 종사하는지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5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재해발생 보고 접수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16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피해상황 내용 관리	•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17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대상자 결정 및 알림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 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18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록신청서 이송	•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조금등 신청사항의 통보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2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변경등록신청서 접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2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출생·사망의 동경유 신고 등	•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2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사망신고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신청 접수	•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망진단서의 확인(날인)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조건불리지역의 선정등	•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7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	•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9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 읍·면·동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에 의견서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면·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통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접수 및 보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접수 및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협약의 체결을 위한 관리협약안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변경 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주소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직접 또는 읍장·면장·동장이나 출장소장을 거쳐서 시장등에게 일괄변경하려는 문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민방위대의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 직권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 편성 결과 등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술지원대원선발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47	•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48	• 민방위기본법	• 동원	• 읍·면·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9	•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경보의 발령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면·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50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면·동협의회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재심의를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51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 읍·면·동장이 읍·면·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52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 읍·면·동협의회회의 심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본인 출석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석심사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를 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5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4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55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및 지침작성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6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57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8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 조직 여부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9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편입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60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1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2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6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현지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4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교육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65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동원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66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대 동원 필요성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7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민방위 동원 사실의 보고	• 동원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8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자발적 민방위 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 읍·면·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9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 접수	•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7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연합직장민방위대의 구성	•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71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민방위대 신규 편입대상자 편입조치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민방위대 대원 명부 작성 등	•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3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면·동장이 한다.
74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5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읍·면·동장은 직접 교부 이외의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76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교육훈련의 면제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77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동원의 및 방법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78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민방위 경보의 발령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의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79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신청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80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1	•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복구 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 보증인의 위촉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인근 리·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미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82	• 인감증명법 시행령	• 후견등기기록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83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전거 등록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4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p>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p>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자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자원조사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자원 연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90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인력자원 연명부 수정 보완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1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자격 면허 통보 접수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92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자격 면허 통보사항 연명부 작성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면허카드(이하 "자격·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93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에서의 주특기 결정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94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인력자원의 전출입 관리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95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중점관리대상 인력 명부 작성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96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중점관리대상 인력 지정사항 통지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7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중점관리대상 인력 연명부 변경사항 반영 수정보완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 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에서 삭제

구분	법령명	사무	근거조문
			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여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8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 해제 및 해제사실의 통보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순위에 따라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순위 결정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규칙에 근거한 위임사무**

- 대법원 규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으로부터 읍·면·동장은 계약서 등의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음
 - 대법원 규칙은 계약서 검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읍·면·동장으로 규정함

라. 읍·면·동 행정의 문제점

□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 다층구조에 따른 거래비용, 의사결정에 시간과 비용 투입의 증가, 정보와 지식의 왜곡, 정책의 신속성 및 시의성(timing), 적실성(relevance) 확보의 한계 등이 발생함
 - 일반적인 행정구조는 자치 2계층 행정 3계층을 기본구조로하며,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자치 2계층 행정 4계층의 구조임
 - 다계층 구조에 따라 행정수행 및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함

- 다계층 구조에 따라 주민의 욕구와 정서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한계가 발생함
 -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더라도, 주민의 생활권별로 특성화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보다는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게되므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발생함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으며, 일반구와 읍·면·동은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는 바, 읍·면·동의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에 한계가 발생함
- 다계층구조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력규모가 증가하며, 인력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공공서비스 공급이 인력규모가 증가한 만큼 증가하지 않음
 -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는 필연적으로 기관유지·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의 투입이 수반되므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산출과 관련없는 투입이 발생함
 - 선행연구결과, 일반구의 설치와, 대동제의 실행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한 바, 일반구의 인력소요가 대동제의 인력소요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분석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은 창원시를 사례로 대동제의 운영과 일반구의 운영을 비교한 바, 평균인구는 대동제보다 일반구가 약 8배 많으며, 인력투입은 일반구의 설치가 약 87.5% 많은 것으로 보고함
 - 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일반구의 경우, 800명, 대동제의 경우, 1,523명으로 일반구의 설치는 인력투입의 효율성이 대동제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함
- 다계층구조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기능중복이 발생함
 - 기능중복이 발생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기관운영 및 유지기능, 민원 및 단속기능 등임

3. 1990년대 읍면동 기능전환

가. 읍·면·동 기능전환 개요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목적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며,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1999년 읍면동의 행정기능의 개편을 추진함

〈표 2-4〉 기능전환 전 하부행정기구(읍면동) 사무

주요기능	주요 내용	인력배분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증명 발급 등: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보, 인감증명, 고지지가, FAX민원, 지방세완납증명,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등 • 신고접수·처리민원: 전입, 주민등록, 호적, 취학아동, 인감, 예비군, 병무, 이륜차 등록신고 등 	평균 3~4명
민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 편성, 인력동원, 비상소집, 교육훈련, 시설장비유지관리, 주민신고방 조직운영, 안전사고 예방, 위험지역 순찰, 기록관리 등 	평균 1명
병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통지서 교부, 병적부 관리, 병력동원, 예비군 관리 	평균 1명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 장애인복지, 의료보호, 취로소득사업, 노인복지, 유아보육, 모자복지, 청소년보호육성 등 	1명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봉투 판매관리, 정화조청소·관리,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 등 	평균 1~2명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고지서 전달 및 체납공과금 징수: 민방위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통지서, 지방세·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지서 	1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단속, 무허가건축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등 	전직원 조편성
공공시설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점용허가, 보안등 관리, 어린이놀이터 청소·유지보수 	1명
지역사회 진흥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웃돕기, 적십자회비모금, 방위협의회, 개발위원회 관리, 환경정비, 지역사회운동, 직능단체 지원 등 	1명
산업/위생/환경/건축/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 농지원부, 물가관리, 산불예방, 조수보호, 위생방역, 환경보호, 건축신고, 민원처리, 통계조사 등 	1~2명
기관유비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반 조직관리, 인사, 서무, 예산집행, 물품·장비관리, 각종 투표 및 선거 지원, 행사·캠페인 시 주민동원 등 	2~3명

나. 읍·면·동의 주요 기능변화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의 주요 분야

- 행정동의 민원기능, 주민관리기능, 사회복지기능, 단속규제기능, 민간협력기능, 상위행정기관 보조기능 등 행정동의 기능을 민원기능, 주민보호기능, 사회복지기능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함
 - 행정동의 기능전환으로, 행정동의 인력을 감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본청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동에는 10명 내외의 인력을 배치함
 - 행정동의 기능전환 이후, 행정동의 기능은 민원기능,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사회복지기능 등의 행정기능과 주민편의기능, 문화활동지원기능, 주민단체활동지원기능, 지역안전관리기능,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분류함

□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의 주요 결과

- 행정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 인력재배치 및 공무원 직무내용의 변화가 발생함
 - 읍면동 기능전환 이전의 동 공무원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집행책임자, 관할지역 및 주민의 지도·관리자, 지도·규제·단속 등의 업무 수행자, 상급기관 지시업무의 대행자 등임
 -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의 동 공무원은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자, 공공행정서비스의 최일선 공급자, 민간자율역량 함양의 후견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중개자·중재자 등임

〈표 2-5〉 1990년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동의 주요기능

읍면동 기능전환 전 행정동 기능		조치 사항	읍면동 기능 전환이후 행정동 기능	
민원기능	• 제증명 발급	존치	민원기능	• 제증명 발급
	• 민원신고 처리			• 민원신고 처리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 주민등록·인감관리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 주민등록·인감관리
	• 민방위·재난관리			• 민방위·재난관리
사회복지기능	•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기능	•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 노인·부녀·아동 복지			• 노인·부녀·아동 복지

읍면동 기능전환 전 행정동 기능		조치 사항	읍면동 기능 전환이후 행정동 기능	
세무기능	• 지방세, 과태료 세원관리	기초 자치 단체 본청 이관	세무기능	
	• 지방세, 과태료 고지서전달			
단속·규제 기능	• 주정차 단속		단속·규제 기능	
	• 불법건축물 단속			
민간협력 기능	• 적십자회비 모금		민간협력 기능	
	• 지역의 자생단체 관리 등			
행정보조 기능	• 환경·위생 부문 본청 및 특 별행정기관 보조기능		행정보조 기능	
	• 산업·도시·건설 부문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			
	• 건축·통계·병무 부문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			
기관 유지 관리 기능	• 예산 및 재산관리(회계관리)		기관 유지 관리 기능	
	• 청사관리 등			
		신규 기능	주민편의 기능	• 회의장, 예식장, 놀이방, 탁아소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
			문화활동 지원기능	• 전시회, 취미교실, 영상 및 음악감상실 운영
				• 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여가활동 조성기능	• 동호회 활동
				• 레크레이션 활동 등
			주민단체 활동지원	•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원
			소비자 보호	• 물물교환
				• 도·농간 자매결연
		생활안정	• 교통안전, 청소년지도 등	
			• 자율방범, 의용소방대 등	
		지역 안전관리	• 축대·하수구·맨홀 등 위 험시설 점검 등	

제3절 책임읍면동

1. 책임읍면동 제도현황

가. 책임읍면동제 개요

□ 책임읍면동제 설치 배경

○ 하부행정기관의 역할 변화

-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하여 리와 동을 둘 수 있도록 함
- 1988년 「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서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과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시와 부천시에 최초로 2개씩의 일반구(자치구 아닌 구)를 설치함
- 1999년 「지방자치법」개정에서 읍·면·동의 기능 중 대부분을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함
- 1999년 당시의 기능이관 사유로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주민접근성이 향상된 것을 고려한 것이 가장 큰 사유임

□ 책임읍면동제의 개념

- 책임읍면동제도는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읍·면·동 모델임(행정자치부⁵⁾, 2015)
- 책임읍면동제도는 시-읍면동의 중층구조를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를 일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청으로부터 읍면동으로 권한위임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함

5) 행정자치부 (2015) 보도자료(2015.4.14.) “주민품으로 더욱 더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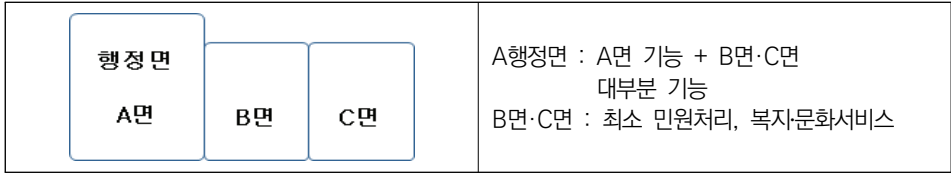
□ 책임읍면동제의 목적

- 책임읍면동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선관료에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책임읍면동으로 지정된 읍·면·동은 본래의 기능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에 맞는 권한을 위임받음
- 읍면동 권한위임 확대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 자치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시민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변의 관청에서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책임읍면동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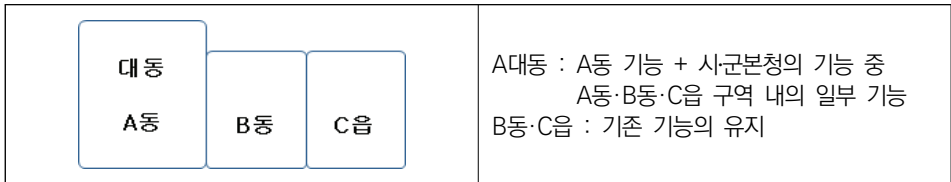
- 책임읍면동은 대동의 주요 모형인 광역동 모형과 중심동 모형 중 중심동모형에 기반을 두고, 대응동 모형과 행정면 모형으로 구분함
 - 중심동 모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에 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대응동 모형은 몇 개의 읍, 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 가운데 하나의 읍 또는 동의 관장기능을 확대하여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모형임
 - 개별 동의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여 2~3개의 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되, 중심지역의 읍 또는 동을 책임읍 또는 책임동으로 지정하여 시군본청 또는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관장하도록 함
- 면지역은 인구가 과소한 2~3개 면의 중심이 되는 행정면을 지정함
 - 행정면에서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임

〈그림 2-3〉 행정면 모형



- 대응동이 기존 사무에 더하여 본청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행정면은 본청 기능의 위임 없이 인근면에서 이관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2-4〉 대응동 모형



나. 책임읍면동의 기능배분

□ 책임동의 기능배분 체계

-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국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와 공통으로 수행하는 공통사무, 그리고 지역별 특화사무 등으로 분류함
 - 책임동의 고유사무와 관련한 기능배분에서 행정의 현장성, 주민의 접근성, 공공서비스 공급의 대응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능을 책임동의 기능으로 배분함

□ 책임동의 고유사무

- 책임동의 고유사무와 관련한 기능은 사회복지, 민원, 국민안전, 선거·투표, 기관유지·관리와 관련한 기능 등으로 분류함

- 사회복지기능의 고유사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 등에 대한 초기상담 및 접수, 자료입력 등의 기능을 책임동의 기능으로 배분함
- 민원기능의 고유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의 발급민원을 비롯한 민원기능을 책임동의 기능으로 배분함
- 국민안전기능의 고유사무와 관련하여, 민방위대 편성, 주민신고, 인력동원, 재해조사 등의 기능을 책임동의 기능으로 배분함
- 선거·투표기능의 고유사무와 관련하여, 선거인 및 부재자 명부작성, 선거벽보 및 공보 등의 기능을 책임동의 기능으로 배분함
- 기관유지기능의 고유사무와 관련하여, 회계관리, 청사관리, 주민자치센터, 체육대회, 새마을 등의 기능을 책임동의 기능으로 배분함

□ 책임동의 위임사무

- 책임동의 국가위임사무와 관련한 기능은 환경관리, 국토관리, 방재관리, 일반행정, 식품위생 등의 기능임
 - 환경관리기능은 수질오염관리, 행정처분, 폐기물 단속 등의 기능임
 - 국토관리기능은 공원 및 녹지관리, 불법지 원상회복 및 지도·단속 기능임
 - 방재관리기능은 소하천·공유수면 관리 및 단속,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능 등임
 - 일반행정기능은 공동이용시설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기능임
 - 식품위생기능은 각종 영업신고·관리에 관한 기능임

□ 책임동의 공통사무

- 책임동의 공통사무, 즉 상위자치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복지기능, 안전관리기능, 주민편의기능, 도시관리기능, 지역여건 반영기능 등임
 - 복지기능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조사, 서비스제공 등 전과정에서의 완결성을 확보한 기능임
 - 안전관리기능은 주민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홍보 등의 기능임

- 주민편의기능은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 부동산중개업의 신고, 정화조 매립 등 신고 등 주민의 생활편의와 관련한 인·허가 기능임
- 도시관리기능은 도시공원관리, 주정차 지도 등 도시공간에서의 현장관리 기능임
- 지역여건반영 기능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하천점용 허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원 기능임

□ 책임동의 지역특화사무

- 책임동의 지역별 특화사무와 관련한 기능은 지역의 특성(예: 공동주택형, 산업단지형, 다문화형, 상업중심지형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기능을 배분함
 - 공동주택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임대업등록, 부동산거래 중개업 관련 인·허가, 관리 기능임
 - 산업단지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일자리센터운영, 공장설립 등록, 지방산업단지 관리 등의 기능임
 - 다문화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지역공동체 조성, 사회통합교육운영, 외국인 정착관리 등의 기능임
 - 상업중심지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지역물가관리, 가격표시제 운영, 위생우수업소 관리 등의 기능임

〈표 2-6〉 책임읍면동 배분 기능 유형

구분	주요기능	주요 내용
고유사무	민원	• 발급민원 등
	사회복지	• 초기상담 및 접수, 자료입력 등
	국민안전	• 민방위 기능, 주민신고 접수, 인력동원, 재해조사 등
	선거 및 투표	• 선거인 및 부재자 명부작성, 선거벽보 및 공보 등
	기관유지관리	• 회계관리, 청사관리 등

구분	주요기능	주요 내용
위임사무	환경관리	• 수질오염관리, 행정처분, 폐기물 단속 등
	국토관리	• 공원 및 녹지관리, 불법지 원산회복 및 지도·단속 등
	방재관리	• 소하천·공유수면 관리·단속, 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일반행정	•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등
	식품위생	•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통사무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접수-조사-서비스공급 등의 전과정의 완결처리에 필요한 기능
	안전관리	• 주민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홍보 등
	주민편의	• 주민편의 관련 사항의 인·허가 기능
	도시관리	• 도시공원관리, 주차차 지도·단속 등 도시현장관리기능
	지역여건반영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 하천점용 허가 등
지역별 특화사무	공동주택형	• 임대사업 등록, 부동산 거래·중개업 관련 기능
	산업단지형	• 일자리센터 운영, 공장설립 등록, 지방산업단지 관리 등
	다문화형	• 지역공동체조성, 사회통합교육운영, 외국인정착관리 등
	산업중심지형	• 지역물가관리, 가격표시제 운영, 위생우수업소 관리 등

다. 책임읍면동제의 특징

□ 책임읍면동제 기능변화

- 2015년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가진 1개의 읍·면·동 사무소에 기초자치단체의 본청 업무의 상당부분을 위임함
 - 읍·면·동의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여 2~3개의 읍·면·동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구역을 설정하고 중심지역의 읍·면·동을 선정함
 - 중심지역의 읍·면·동은 시·군 본청 또는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추

가적으로 관장함(행정자치부, 2015)

- 결국 책임읍면동은 기존 읍·면·동 수행사무에 더하여 본청 등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함
 - 복지 및 안전, 주민자치강화, 현장행정 실현 등 책임읍면동 시범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무를 중심으로 책임읍면동의 기능을 제시함
- 일반적으로 책임읍면동에 배분되는 읍면동 고유사무는 약204건이며, 사회복지, 민원사무, 국민안전, 선거투표, 기관유지 등의 기능임
 - 사회복지기능은 기초생활, 차상위등 초기 상담 및 접수, 자료입력 등의 기능을 책임읍면동에 배분함
 - 민원기능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의 발급민원을 비롯한 주요 민원 기능을 배분함
 - 국민안전 기능은 민방위대 편성, 주민신고, 인력동원, 재해조사 등의 기능을 책임읍면동의 기능으로 배분함
 - 선거투표기능 선거인(투표인) 및 부재자명부작성, 선거벽보 및 공보 등의 기능으로 배분함
 - 기관유지기능은 회계관리, 청사관리, 통리반, 주민자치센터, 체육대회, 새마을 등의 기능을 배분함
- 책임읍면동에 배분되는 국가위임사무는 환경관리, 국토관리, 방재관리, 일반행정, 식품위생 기능 등임
 - 환경관리기능은 수질오염관리, 행정처분, 폐기물 단속 등의 기능임
 - 국토관리기능은 공원 및 녹지관리, 불법지 원상회복 및 지도·단속 등임
 - 방재관리기능은 소하천·공유수면 관리 및 단속, 소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기능 등을 배분함
 - 일반행정기능은 공중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기능을 배분함
 - 식품위생기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각종 영업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배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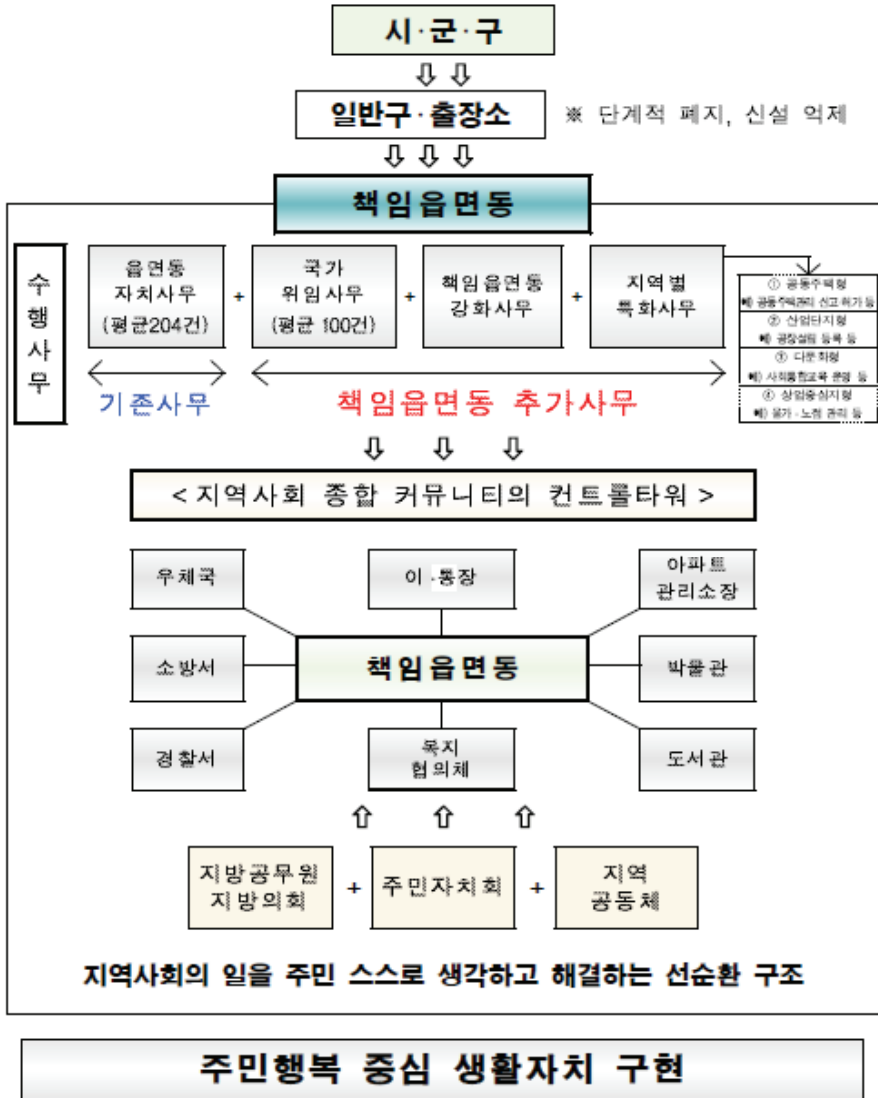
- 책임읍면동 공통 강화사무는 복지사무, 안전사무, 주민편의, 도시관리, 지역여건 반영 등의 기능임
 - 복지기능은 신청-접수-조사-지급의 전과정에 대한 완결처리 기능을 배분함
 - 안전관리기능은 주민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홍보 등의 기능을 배분함
 - 주민편의기능은 음식점 신고, 부동산중개업 신고, 정화조 신고 등 주민편의 인·허가 기능을 배분함
 - 도시관리기능은 도시공원 관리, 주정차 지도 등 주민생활 직결되는 도시현장관리 기능을 배분함
 - 지역여건 반영기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 하천점용 허가 등 지역특성 반영 민원 등의 기능을 배분함
- 책임읍면동에 배분되는 지역별 특화사무는 공동주택형, 산업단지형, 다문화형, 상업중심지형 등 지역유형에 따라 특화사무를 배분하는 것임
 - 공동주택형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임대사업 등록, 부동산 거래·중개업 관련 사무 등을 배분함
 - 산업단지형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일자리센터 운영, 공장설립 등록, 지방산업단지 관리 등을 배분함
 - 다문화형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지역공동체조성, 사회통합교육운영, 외국인정착관리 등의 사무를 배분함
 - 상업중심지형 유형의 지역별 특화사무는 지역물가관리, 가격표시제 운영, 위생 우수업소 관리 등의 사무를 배분함

□ 책임읍면동제 행정체제변화

- 조직측면에서, 기존의 하부기관 없이 1개 동으로 운영되던 것을 책임읍면동에서는 4개 이내의 과(5급)를 설치·운영함
 - 대동읍 3과 설치시 자치행정부문, 복지협력부문, 생활안전부문으로 편제하도록 함

- 명칭은 대동읍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행정면은 “○○면 사무소” 등으로 함
- 인사측면에서 대응동장은 인구 및 면적에 따라 4급 또는 5급으로 보함
 - 행정면장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4급 또는 5급으로 하도록 함
- 기능배분측면에서 대응동은 기존의 읍·면·동의 기능과 더불어 시·군 본청의 기능을 이관하여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
 -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주민등록, 인감, 통합민원, 사회복지 등 200여종의 사무를 수행함
 - 동시에, 기존의 시·군에서 수행하던 사회복지긴급지원, 무한돌봄, 환경, 청소, 주·정차, 공원, 녹지, 하천, 안전, 재난, 교통시설긴급복구 등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함

〈그림 2-5〉 책임읍동제 모델



자료: 행정안전부, 2015

□ 기존 읍면동제도와 책임읍면동제의 행정체제 비교

-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하부기관 없이 1개 동으로 운영되던 것을 책임읍면동에는 5급의 과를 4개 이내 설치함
 - 대응동은 자치행정부문, 복지협력부문, 생활안전부문으로 편제
 - 행정면은 5급 과를 인근 면의 수 이내로 3년간 한시적 설치
 - 명칭은 대응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행정면의 경우 ‘○○면사무소’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가능하도록 함
- 둘째, 대응동장은 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4급 또는 5급으로 함
 - 단, 행정면장의 경우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3년한시로 4급 면장을 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급 면장을 보함
- 셋째, 사무의 경우 기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인감, 통합민원, 사회복지, 단체관리 등 약 200건의 사무에서 약 70여건의 시본청 이관사무를 추가하여 수행토록 함
 - 이관사무에는 사회복지 긴급지원, 무한돌봄, 환경, 청소, 주정차, 공원, 녹지, 하천, 안전, 재난, 교통시설 긴급복구 등 포함함

라. 책임읍면동제의 기대효과

□ 주민편의 증진

-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시청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청사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에서 공공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책임읍면동에서는 기존의 읍면동사무와 더불어 국가위임사무, 책임읍면동강화사무, 그리고 지역별 특화사무를 관장하고, 이에 대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직접 공급함
- 책임읍면동으로 읍면동의 관할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

- 읍면동의 인력운용 탄력성을 확보함(예: 충분한 대직자 확보)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원에 의한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함
- 예를들어, 읍면동에서 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직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책임읍면동은 인력운용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대채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주민역할 강화

- 책임읍면동제의 적용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이 지역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생활자치의 여건을 조성함
- 책임읍면동제는 실시여부 자체가 주민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제시함

□ 행정효율성 제고

- 청사운영, 시설운영, 인력운영 등 행정서비스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발현시켜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제고함
- 일반구 청사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함

2.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현황

가.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개요

□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적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지위를 법률로서 보장받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의 지역격차 해소 목적의 책임읍동제

- 세종특별자치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인 중·남부와 농촌지역인 북부 사이의 지역격차가 존재함
 - 세종시청 본청은 보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서북지역 소정면에서 본청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50분이 소요됨
 - 시 본청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사무를 모두 처리함에 따른 지역간 공공서비스 공급의 불균형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노정됨
- 세종특별자치시는 책임읍동제의 시행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의 해소를 추진함
 - 책임읍동제의 주민들은 시 본청 방문 없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시 본청의 업무를 위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도심과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함
 - 조치원 책임읍은 북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정부세종청사가 입지한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
 - 아람 책임동은 세종시의 1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도시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할구역 범위 내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읍동 설계

- 세종특별자치시는 대동과 함께 대응모델을 적용함
 - 대동모델은 아람동과 도담동을 통합하고, 아람동을 대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임
 - 대응모델은 조치원읍과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 등 1읍 4면을 통

합하고, 조치원대읍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임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읍동 기능배분 현황

□ 조치원읍

- 조치원읍은 책임읍동으로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의 관할 구역을 모두 관할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재무분야 3개 사무, 민원분야 12개사무, 건설도시분야 76개사무, 문화체육분야 2개사무, 안전분야 29개사무, 복지분야 53개사무, 경제산업분야 39개 사무 등 총 7개공공서비스 분야의 214개 사무를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함

〈표 2-7〉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재무	1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세정과
	2	•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세정과
	3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세정과
민원	1	•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민원과
	2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민원과
	3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민원과
	4	•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민원과
	5	• 외국인 토지 관리	토지정보과
	6	• 부동산계약서 검인	토지정보과
	7	•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정보과
	8	•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토지정보과
	9	•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토지정보과
	10	•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토지정보과
	11	•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토지정보과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민원	12	•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토지정보과
건설도시	1	•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간판표시 계획서 소관 업무 포함)	경관디자인과
	2	•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	경관디자인과
	3	•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경관디자인과
	4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경관디자인과
	5	•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경관디자인과
	6	•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경관디자인과
	7	•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경관디자인과
	8	•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경관디자인과
	9	•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참여공동체과
	10	•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참여공동체과
	11	•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건축과
	12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주택과
	13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주택과
	14	• 불법건축물 현장계도	건축과
	15	• 불법건축물 발생보고	건축과
	16	• 건축신고	건축과
	17	• 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건축과
	18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건축과
	19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과
	20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과
	21	• 건축물 철거 신고	건축과
	22	• 건축물 멸실 신고	건축과
	23	• 공작물 축조 신고	건축과
	24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건축과
	25	•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건축과
	26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건축과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건설도시	27	•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건축과
	28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과
	29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과
	30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건축과
	3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건축과
	32	• 건축물표시 변경	건축과
	33	• 건축물표시 정정	건축과
	34	• 건축물소유자 변경	건축과
	35	• 건축물소유자 정정	건축과
	36	• 건축물 지번 변경	건축과
	37	• 건축물 지번 정정	건축과
	38	•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건축과
	39	•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건축과
	40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과
	41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건축과
	42	•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축탁	건축과
	43	•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건축과
	44	•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건축과
	45	•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건축과
	46	•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도로과
	47	• 도시계획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도로과
	48	• 농어촌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도로과
	49	• 시도 도로점용 허가	도로과
	50	• 시도 도로점용 준공	도로과
	51	•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과
	52	•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도로과
	53	•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과
	54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도로과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건설도시	55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도로과	
	56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과	
	57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도로과	
	58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과	
	59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도로과	
	60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도로과	
	61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과	
	62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도로과	
	63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도로과	
	64	•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과	
	65	•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과	
	66	•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과	
	67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교통과	
	68	•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교통과(공사)	
	69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교통과	
	70	• 주정차 이동단속	교통과	
	71	•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교통과	
	72	•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시설관리사업소	
	73	• 환경관리원 관리	자원순환과	
	74	•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자원순환과	
	75	•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시설관리사업소	
	76	•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자원순환과	
	문화체육	1	•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체육진흥과
		2	•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체육진흥과
	안전	1	•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 활동 지원	안전정책과
		2	•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안전정책과
3		•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안전정책과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안전	4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정책과	
	5	•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보건정책과	
	6	•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보건정책과	
	7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보건정책과	
	8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보건정책과	
	9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소비유통단계)	보건정책과	
	10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보건정책과	
	11	• 식품 등의 수거검사	보건정책과	
	12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보건정책과	
	13	•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보건정책과	
	14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보건정책과	
	15	• 공중위생업의 승계	보건정책과	
	16	•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보건정책과	
	17	•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보건정책과	
	18	•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보건정책과	
	19	•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보건정책과	
	20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보건정책과	
	21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보건정책과	
	22	•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보건정책과	
	23	• 아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보건정책과	
	24	•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보건정책과	
	25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보건정책과	
	26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보건정책과	
	27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보건정책과	
	28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보건정책과	
	29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보건정책과	
	복지	1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복지정책과
		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복지정책과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복지	3	•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복지정책과
	4	•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복지정책과
	5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복지정책과
	6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복지정책과
	7	•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복지정책과
	8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9	•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0	•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1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2	•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3	•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4	•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5	•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복지정책과
	16	•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7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복지정책과
	18	•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복지정책과
	19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복지정책과
	20	•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복지정책과
	2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2	•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아동청소년과
	23	•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4	•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아동청소년과
	25	•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6	•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7	•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8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노인장애인과
	29	•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노인장애인과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복지	30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아동청소년과
	31	• 경로당 설치 신고	노인장애인과
	32	• 경로당 폐·휴지 신고	노인장애인과
	33	• 경로당 변경 신고	노인장애인과
	34	•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35	•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노인장애인과
	36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37	• 경로당 양곡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38	•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노인장애인과
	39	• 기초연금 지원	노인장애인과
	40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41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노인장애인과
	42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노인장애인과
	43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노인장애인과
	44	• 장애(아동) 수당 지원	노인장애인과
	45	• 장애인연금 지원	노인장애인과
	4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노인장애인과
	47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건축 협의 등)	노인장애인과
	48	•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연간 협력 총괄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한정)
	49	•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한정)
	50	•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한정)
	51	• 통합사례관리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한정)
	52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한정)
	53	•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한정)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산업경제	1	• 담배소매인의 지정	경제정책과
	2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경제정책과
	3	•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경제정책과
	4	•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경제정책과
	5	•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경제정책과
	6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경제정책과
	7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경제정책과
	8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경제정책과
	9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환경정책과
	10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환경정책과
	11	•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환경정책과
	12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환경정책과
	13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환경정책과
	14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환경정책과
	15	•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환경정책과
	16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상하수도과
	17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상하수도과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상하수도과
	19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상하수도과
	20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내부청소, 비정상운영신고 등)	상하수도과
	21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상하수도과
	22	•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상하수도과
	23	•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상하수도과
	24	• 공중화장실 설치	환경정책과
	25	•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환경정책과
	26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환경정책과
	27	•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환경정책과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산업경제	28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	환경정책과
	29	•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농업축산과
	30	•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	농업축산과
	31	• 축산농가 재해 조사	농업축산과
	32	•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농업축산과
	33	•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농업축산과
	34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농업축산과
	35	• 유기동물 신고 접수	농업축산과
	36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로컬푸드과
	37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로컬푸드과
	38	• 건축신고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취소	로컬푸드과
	39	•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로컬푸드과

□ 아름동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재무분야 3개 사무, 민원분야 12개사무, 건설도시분야 29개사무, 문화체육분야 2개사무, 안전분야 29개사무, 복지분야 53개사무, 경제산업분야 25개 사무 등 총 7개공공서비스 분야의 150개 사무를 아름동장에게 위임함

〈표 2-8〉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재무	1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세정과
	2	•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세정과
	3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세정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민원	1	•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민원과
	2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민원과
	3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민원과
	4	•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민원과
	5	• 외국인 토지 관리	토지정보과
	6	• 부동산계약서 검인	토지정보과
	7	•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정보과
	8	•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토지정보과
	9	•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토지정보과
	10	•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토지정보과
	11	•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토지정보과
	12	•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토지정보과
건설도시	1	•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참여공동체과
	2	•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참여공동체과
	3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주택과
	4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주택과
	5	•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도로과
	6	• 도시계획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도로과
	7	• 시도 도로점용 허가	도로과
	8	• 시도 도로점용 준공	도로과
	9	•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과
	10	•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도로과
	11	•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과
	12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도로과
	13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도로과
	14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과
	15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도로과
	16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과
	17	•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건설도시	18	•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과
	19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교통과
	20	•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교통과(공사)
	21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교통과
	22	•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교통과
	23	•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시설관리사업소
	24	• 환경관리원 관리	자원순환과
	25	•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자원순환과
	26	•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시설관리사업소
	27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수집·운반·처리실태에 대한 지도	자원순환과
	28	• 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	자원순환과
	29	•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자원순환과
문화체육	1	•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체육진흥과
	2	•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체육진흥과
안전	1	•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안전정책과
	2	•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안전정책과
	3	•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안전정책과
	4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정책과
	5	•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보건정책과
	6	•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보건정책과
	7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보건정책과
	8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보건정책과
	9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소비유통단계)	보건정책과
	10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보건정책과
	11	• 식품 등의 수거검사	보건정책과
	12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보건정책과
	13	•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보건정책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안전	14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보건정책과
	15	• 공중위생업의 승계	보건정책과
	16	•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보건정책과
	17	•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보건정책과
	18	•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보건정책과
	19	•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보건정책과
	20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보건정책과
	21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보건정책과
	22	•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보건정책과
	23	• 아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보건정책과
	24	•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보건정책과
	25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보건정책과
	26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보건정책과
	27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보건정책과
28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보건정책과	
29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보건정책과	
복지	1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복지정책과
	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복지정책과
	3	•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복지정책과
	4	•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복지정책과
	5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복지정책과
	6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복지정책과
	7	•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복지정책과
	8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9	•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0	•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1	• 차상위부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2	•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3	•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복지	14	•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5	•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복지정책과
	16	•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복지정책과
	17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복지정책과
	18	•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복지정책과
	19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복지정책과
	20	•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복지정책과
	2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2	•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아동청소년과
	23	•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4	•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아동청소년과
	25	•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6	•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7	•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여성가족과
	28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노인장애인과
	29	•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노인장애인과
	30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아동청소년과
	31	• 경로당 설치 신고	노인장애인과
	32	• 경로당 폐휴지 신고	노인장애인과
	33	• 경로당 변경 신고	노인장애인과
	34	•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35	•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노인장애인과
	36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37	• 경로당 양곡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38	•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노인장애인과
	39	• 기초연금 지원	노인장애인과
	40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41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노인장애인과
	42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노인장애인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복지	43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노인장애인과
	44	• 장애(아동) 수당 지원	노인장애인과
	45	• 장애인연금 지원	노인장애인과
	4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노인장애인과
	47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건축 협의 등)	노인장애인과
	48	•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민간 협력 총괄	복지정책과
	49	•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복지정책과
	50	•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복지정책과
	51	• 통합사례관리	복지정책과
	52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복지정책과
	53	•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복지정책과
산업경제	1	• 담배소매인의 지정	경제정책과
	2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경제정책과
	3	•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경제정책과
	4	•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경제정책과
	5	•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경제정책과
	6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경제정책과
	7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경제정책과
	8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경제정책과
	9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상하수도과
	10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상하수도과
	11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상하수도과
	12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상하수도과
	13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내부청소, 비정상운영신고 등)	상하수도과
	14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상하수도과
	15	•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상하수도과
	16	•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상하수도과
	17	• 공중화장실 설치	환경정책과
	18	•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환경정책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산업경제	19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환경정책과
	20	•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환경정책과
	21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	환경정책과
	22	•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농업축산과
	23	•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농업축산과
	24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농업축산과
	25	• 유기동물 신고 접수	농업축산과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읍동 기능배분 차이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치원읍장과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비교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 3개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민원분야 12개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 도시 분야 사무는 총 29개 사무이며, 이 중 27개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체육분야 2개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안전분야 29개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분야 53개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경제분야 25개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동일함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치원읍장에게만 위임하는 사무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아름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도시건설분야 사무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8개 사무, 불법건축물에 관한 2개 사무, 건축물에 관한 30개사무, 농어촌도로에 관한 7개사무,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사무, 주정차 이동단속 사무 등 총 49개 사무임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아름동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산업경제분야 사무는 가축분뇨에 관한 7개 사무, 축산업에 관한 3개 사무,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등에 관한 4개사무 등 총 14개 사무임

〈표 2-9〉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조치원읍장에게만 위임하는 사무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건설도시	1	•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간판표시 계획서 소관업무 포함)	경관디자인과
	2	•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	경관디자인과
	3	•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경관디자인과
	4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경관디자인과
	5	•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경관디자인과
	6	•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경관디자인과
	7	•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경관디자인과
	8	•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경관디자인과
	9	•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건축과
	10	• 불법건축물 현장계도	건축과
	11	• 불법건축물 발생보고	건축과
	12	• 건축신고	건축과
	13	• 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건축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건설도시	14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건축과
	15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과
	16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과
	17	• 건축물 철거 신고	건축과
	18	• 건축물 멸실 신고	건축과
	19	• 공작물 축조 신고	건축과
	20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건축과
	21	•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건축과
	22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건축과
	23	•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건축과
	24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과
	25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과
	26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건축과
	27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건축과
	28	• 건축물표시 변경	건축과
	29	• 건축물표시 정정	건축과
	30	• 건축물소유자 변경	건축과
	31	• 건축물소유자 정정	건축과
	32	• 건축물 지번 변경	건축과
	33	• 건축물 지번 정정	건축과
	34	•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건축과
	35	•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건축과
	36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과
	37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건축과
	38	•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건축과
	39	•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건축과
	40	•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건축과
	41	•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건축과
42	• 농어촌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도로과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건설도시	43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도로과
	44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도로과
	45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과
	46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도로과
	47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도로과
	48	•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과
	49	• 주정차 이동단속	교통과
산업경제	1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환경정책과
	2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환경정책과
	3	•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환경정책과
	4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환경정책과
	5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환경정책과
	6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환경정책과
	7	•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환경정책과
	8	•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농업축산과
	9	•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	농업축산과
	10	• 축산농가 재해 조사	농업축산과
	11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로컬푸드과
	12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로컬푸드과
	13	• 건축신고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취소	로컬푸드과
	14	•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로컬푸드과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아름동장에게만 위임하는 사무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사무 중 아름동장에게만 위임하는 사무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수집·운반·처리실태에 대한 지도’ 사무와 ‘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 사무 등 2개 사무임

〈표 2-10〉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사무 중 아름동장에게만 위임하는 사무

공공 서비스	연번	사 무 명	소관부서
건설도시	1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수집·운반·처리실태에 대한 지도	자원순환과
	2	• 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	자원순환과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기능배분 분석

제1절 연구설계

제2절 조사설계

제1절 연구설계

1. 기능배분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의 측면에서 책임읍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먼저 책임읍동에 배분함
- 책임읍동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무는 세종시에 배분함

□ 불경합의 원칙

- 세종시와 책임읍동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않도록 그 사무의 소관과 처리의 권한·책임을 명백히 하는 원칙이며, 권한·책임명확화의 원칙이라고도 함

□ 현지성의 원칙

-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책임읍동에 많이 배분하는 원칙임

□ 종합성의 원칙

- 주민편의를 위하여 책임읍동에서 one-stop 으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칙임

□ **경제성의 원칙**

- 사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책임읍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는 원칙임

2. 기능배분 기준

가. 기능배분의 일반적 기준

□ **대응성**

-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능률성**

-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시 본청에서 담당하고, 책임읍동이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책임읍동이 담당하여야 함
- 특히, 책임읍동 지역마다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야 하는 사무는 책임읍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공평성**

- 책임읍동 간에 어떤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재정적 능력에 있어서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사무수행의 결과가 책임읍동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동일한 책임읍동 주민들 간 행정서비스 수혜 정도에 있어 격차가 발행할 수 있음
- 책임읍동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책임성

-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본청과 읍면동 간에 중복적으로 배분되지 않아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 본청과 읍면동에 중복적인 기능배분이 발생하는 경우, 경비부담 및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짐

나.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 주민편의성

-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하부 행정기구(읍면동)에 많이 배분하여야 함
- 주민편의를 위하여 책임읍동에서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one-stop service)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의 효율성

-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의 사무는 세종시와 책임읍동간에 중복적으로 배분되지 않아야 함
- 책임읍동 지역마다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야 하는 사무는 책임읍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사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여야 함
- 책임읍동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현지성**

-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책임 읍동에 많이 배분하는 원칙임

□ **행정의 완결성**

- 행정시책의 계획업무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업무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업무 처리를 주민과 가까운 책임읍동에서 처리함

〈그림 3-1〉 책임읍동의 기능배분 기준

- ※ 책임읍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
- 통합적 민원처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 일선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무
 - 주민 접촉성 및 편의성을 갖는 사무
 - 지도감독적 성격의 업무
 - 시장이 반드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
 - 정책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
 - 책임읍동에서 완결 지을 수 있는 사무 등

기능배분 전략

⇒

책임읍동의 기능 = 공통기능 + 지역특화기능 + 본청 위임기능

3. 기능배분 방법

가. 수직적 기능배분

□ **세종특별자치시 본청과 책임읍면동 간의 기능배분**

-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 및 자치기능은 현장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청의 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함
 - 본청에서 읍면동으로의 기능배분은 특별히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읍면동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의 하부행정기관인 바, 본청의 사무를

-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사무에 관한 궁극적인 법적 책임과 권한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에 있음
- 읍면동 차원에서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완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민이 읍면동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절차상 완결성이 전제되어야 함

나. 수평적 기능배분

□ 수평적 기능배분 기준

- 기능 동질성 기준을 적용함
 - 다수의 상이한 기능이 존재할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들 간 통합·배치하는 원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읍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분함
- 통솔범위의 기준: 한 사람의 상관이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적 한계임. 보통 4명이 기본 단위가 됨

□ 세종특별자치시의 수평적 기능배분 원칙

- 현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책임읍동으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 수행할 사무로 분류함
-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의 사무중에서 책임읍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를 도출함
 - 현재의 행정체제로의 변화 전, 1990년대 읍면동 기능개편 이전을 포함한 읍면동의 과거 기능을 중심으로 도출함
-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사한 인구규모와 도시특성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기능배분 사례로부터 기능배분 대안을 도출함

제2절 조사설계

1. 조사설계

가. 조사대상

- 층화표본추출방법 적용: 전문가와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표 조사**
 - 지방분권 및 사무배분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표를 배포·회수함
 -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 중 서비스 분야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회수함
 -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 중 서비스 분야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되, 응답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바, 현재의 업무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함

나. 조사표 조사

- 조사기준일은 2021년 5월 29일 현재임**
 - 조사표 배포 및 회수 일정은 2021년 5월 29일 배포, 2021년 6월 4일 회수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표 조사는 본 연구의 담당부서의 협조로 수행함
 - 전문가에 대한 조사표 조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함

2. 조사도구

가. 조사표 구성

-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응동에 대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구성함**

- 세종특별시 아름동과 조치원읍의 위임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구성함
- 분석과정에서 사무별 책임읍대상사무와 책임동대상사무를 구분함
- 세종특별시의 책임읍동에 관한 위임사무 별 사무위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
- 세종특별시의 책임읍동에 관한 위임사무별, 사무위임의 타당성 여부의 판단 근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

나. 조사표

- 전술한 조사표 구성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사표를 구성함

〈표 3-1〉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읍동에 대한 위임사무 별 타당성 조사표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재무	1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2	•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3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민원	1	•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2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3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5	• 외국인 토지 관리					
	6	• 부동산계약서 검인					
	7	• 부동산 실거래 신고					
	8	•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9	•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시성	완결성	
민원	10	•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11	•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12	•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건설도시	1	•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간판표시 계획서 소관업무 포함)					
	2	•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 처리					
	3	•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4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5	•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6	•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7	•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8	•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9	•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10	•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11	•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12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13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14	• 불법건축물 현장계도					
	15	• 불법건축물 발생보고					
	16	• 건축신고					
	17	• 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18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19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건설도시	20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21	• 건축물 철거 신고					
	22	• 건축물 멸실 신고					
	23	• 공작물 축조 신고					
	24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25	•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26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27	•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28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29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30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3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32	• 건축물표시 변경					
	33	• 건축물표시 정정					
	34	• 건축물소유자 변경					
	35	• 건축물소유자 정정					
	36	• 건축물 지번 변경					
	37	• 건축물 지번 정정					
	38	•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39	•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40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41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42	•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43	•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44	•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45	•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46	•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시성	완결성	
건설도시	47	• 도시계획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48	• 농어촌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49	• 시도 도로점용 허가					
	50	• 시도 도로점용 준공					
	51	•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52	•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53	•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54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55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56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57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58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59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60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61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62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63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64	•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65	•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66	•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67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68	•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69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건설도시	70	• 주차차 이동단속					
	71	•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72	•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73	• 환경관리원 관리					
	74	•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75	•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76	•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문화체육	1	•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2	•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3	• 게임제공업 등 허가					
	4	• 게임제공업 등 승계(폐업)					
	5	• 게임제공업 사후관리					
	6	• 게임제공업 과징금 부과 징수					
	7	• 게임제공업 폐쇄					
	8	• 노래연습장업 등록					
	9	• 노래연습장업 변경, 승계, 폐업					
	10	• 노래연습장업 과징금·과태료					
	11	• 상영신고					
	12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3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승계 및 폐업					
	14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15	• 출판사 신고					
	16	• 불법간행물 수거·폐기					
	17	• 과태료 부과 징수					
	18	• 인쇄사 신고					
	19	• 인쇄사 신고필증					
	20	• 인쇄사의 과태료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문화체육	21	• 여행업 등록 및 등록취소, 양수도 등					
	22	• 여행업 보험가입					
	23	• 여행업 여행계약					
	24	• 여행업 폐쇄,					
	25	• 여행업 검사					
	26	• 여행업 과태료					
안전	1	•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2	•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3	•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4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5	•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6	•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7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8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9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소비유통단계)					
	10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11	• 식품 등의 수거검사					
	12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13	•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14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15	• 공중위생업의 승계					
	16	•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17	•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18	•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19	•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안전	20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 교육(행정처분) 관리					
	21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22	•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23	• 아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24	•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25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26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27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28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29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복지	1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3	•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4	•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5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6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7	•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8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9	•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10	•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11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12	•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13	•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14	•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15	•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복지	16	•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17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18	•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19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20	•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2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보장결정 및 통지					
	22	•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23	•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24	•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25	•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26	•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27	•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28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29	•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30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31	• 경로당 설치 신고					
	32	• 경로당 폐휴지 신고					
	33	• 경로당 변경 신고					
	34	• 경로당 운영비 지원					
	35	•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36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37	• 경로당 양곡비 지원					
	38	•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39	• 기초연금 지원					
	40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복지	41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42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 장애인 월동비)					
	43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44	• 장애(아동) 수당 지원					
	45	• 장애인연금 지원					
	4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47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건축 협의 등)					
	48	•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 관련 민간 협력 총괄					
	49	•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50	•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51	• 통합사례관리					
	52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53	•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산업경제	1	• 담배소매인의 지정				
2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3		•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4		•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5		•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6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7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8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9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10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11		•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산업경제	12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13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14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15	•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17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9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					
	20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내부청소, 비정상운영신고 등)					
	21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22	•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3	•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24	• 공중화장실 설치					
	25	•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26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27	•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28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					
	29	•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30	•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명령					
	31	• 축산농가 재해 조사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산업경제	32	•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 (변경신고)					
	33	•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34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35	• 유기동물 신고 접수					
	36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37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38	• 건축신고취소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취소					
	39	•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40	• 소음측정					
	41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42	•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확인					
	43	• 소음·진동 개선명령					
	44	• 조업정지명령					
	45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46	• 소음규제					
	47	• 과태료 부과 징수					
	48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49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승계					
	50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불법행위 단속					
	51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52	•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53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54	•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판단기준				타당성 판단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산업경제	55	• 건설폐기물 배출자 과태료 부과 징수					
	56	•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및 폐업					
	57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58	• 기업체 재해조사					
	59	• 기업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					
	60	• 공장(변경)등록(취소)					
	61	• 기업체 일제조사					
	62	• 기업현장방문					
	63	• 기업애로관리					
	64	• 기업사후관리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능분석

제1절 기능분석

1. 전문가 워크숍 결과

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사무의 이관대상 사무

○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으로부터 책임동으로 이관해야 할 사무를 추출함

〈표 4-1〉 책임동의 기능 재배분: 전문가 의견수렴 안

분야	기능(사무)	비고
안전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0조
건설교통	•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등에 관한 협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7조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복지	• 공유수면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26조, 4조, 28조 등
	• 공유수면관리청및매립면허관청권한부여	
	• 급여 처분 등 이의신청 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 이의신청 각하 등 처분 이의신청 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
	• 이의신청 각하 등 처분, 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9조
교육	• 구직등록·취업상담·알선 및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직업안정법 제4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9조
환경	•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 먹는물관리법 제8조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 구역 내 환경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산업경제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권한 확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 벤처·창업 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 제17조의2, 제18조의3

나. 주민생활 밀접 사무의 기능 재배분

○ 사회복지분야 사무를 중심으로 법령에 의해 재위임이 가능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중 이관 대상사무를 추출함

〈표 4-2〉 책임동의 주민생활 밀접 기능 재배분

분야	기능(사무)	비고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상담실 운영 •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조사수급자 수급여부 확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결정 • 사회보장에 대한 상담 및 시행 •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진단 경비 등 보조 •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건강 보호·증진 위한 시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지원법의 목적 실현 • 유관 복지지원법과의 통합적 추진 • 1999년까지 읍면동이 주로 수행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사항 확인 및 통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자금 지급 및 학자금 지원실적 보고 • 저소득층 생활안전 점검 • 사례관리, 의료급여 관리사 설치 	
임신부지원/영유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위기가족긴급지원 • 보육료신청서 접수 및 양육수당 지원 • 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보육, 방과 후 서비스 •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양육 신청 및 처리 •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변경 • 기타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자 심의 및 책정 •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 결합가정 및 저소득 아동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호를 위한 서비스 집중 • 저출산대책을 통합 지원 • 지역 현장의 서비스 기능 강화 • 주민근접성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학교교육 등 연계시책 시행 • 청소년 가출 등 예방, 복지적 지원 제공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보급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자 책정 • 결식아동 석식 지원 • 청소년 공부방 관리 • 청소년 활동 및 체육시설, 청소년 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관과 연계성 강화 • 현장성과 대응성 제고

분야	기능(사무)	비고
노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부양가족 실태조사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 • 경로연금지급 • 교통수당지급 •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상담 • 실종노인 보호 신고 및 신상카드작성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매장증명서 발급 등 • 경로당 신개축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 • 독거노인 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봉사자 발굴모집 및 활동 지원 • 노인공동작업장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접근성 제고 • 서비스 지향성 실효성 강화 • 집행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완결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의 신청, 접수, 결과통지 • 청소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 가족복지상담 및 생활정보제공 •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사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발급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송부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 외국인 등록사실 통보 • 외국인 전출전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성과 대응성 제고 • 서비스 지향성
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정보접근수단 제공/장애인정보화 지원 • 장애인 재활의료 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및 제공 등 • 장애인(동행자) 세제·이용료·운임 감면 등 • 장애인연금의 지급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 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 및 접수 • 장애인 판정결과 관리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등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접근성, 지역현장성 제고 • 서비스 지향성

분야	기능(사무)	비고
일반주민 대상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 영양취약 계층조사 및 보조금 지급 •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의 위해 교육·홍보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자원봉사자 행사 주관 및 참여 •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상실 및 변경사항 통보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및 재사용 확인 • 자살예방상담 및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 제고 • 집행성 확대 • 지역현장성 제고 • 주민접근성

2. 조사표 조사결과

가. 재무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등록면허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결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행정효율성 &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4	4
합계	2	22	24	

□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결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1	2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행정효율성 &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4	4
합계	2	21	23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1	2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행정효율성 &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4	4
합계	2	21	23	

나. 민원

□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6	7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2	2
	행정효율성 &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6	7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2	24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5	6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3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1	11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1	5	6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3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1	25	26

□ 외국인 토지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외국인 토지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4	5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2	19	21	

□ 부동산계약서 검인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계약서 검인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1	1
	현지성	0	3	3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0	23	23	

□ 부동산 실거래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0	1	1
	현지성	0	4	4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2	23	23

□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1	2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2	20	22

□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1	2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2	19	21	

□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1	20	21	

□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2	18	20

□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3	3
합계		1	20	21

다. 건설도시

□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간판표시 계획서 소관업무 포함)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3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3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9	23

□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9	23

□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7	8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1	1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21	24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8	22	

□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20	23

□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4	18	22

□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20	23	

□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20	23	

□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2	2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21	22	

□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4	4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1	24	25	

□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7	20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완결성	1	0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5	18	23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1	11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2	24	

□ 불법건축물 현장계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불법건축물 현장계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0	8	8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1	22	23	

□ 불법건축물 발생보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불법건축물 발생보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8	8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건축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9	22	

□ 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1	0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9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1	0	1
	완결성	3	2	5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6	20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8	21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8	22	

□ 건축물 철거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철거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9	21	

□ 건축물 멸실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멸실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9	21	

□ 공작물 축조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작물 축조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9	21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9	10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9	10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9	10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9	10
	행정효율성	0	2	2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8	9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완결성측면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소관사무로 나타남

〈표 4-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0	0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4	19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0	0	0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4	19	

□ 건축물표시 변경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표시 변경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7	8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6	20	

□ 건축물표시 정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표시 정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건축물소유자 변경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소유자 변경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1	1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19	20

□ 건축물소유자 정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소유자 정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1	1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19	20	

□ 건축물 지번 변경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지번 변경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18	19	

□ 건축물 지번 정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지번 정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18	19	

□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9	10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7	19	

□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9	10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7	19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8	9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2	12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21	22

□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6	19

□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0	6	6
	현지성	0	0	0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0	22	22	

□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0	7	7
	현지성	0	0	0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0	22	22	

□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7	8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4	2	6
	현지성	0	4	4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3	18

□ 도시계획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4	2	6
	현지성	0	4	4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5	20	

□ 농어촌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5	5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9	21	

□ 시도 도로점용 허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도로점용 허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시도 도로점용 준공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도로점용 준공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3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8	21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3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8	21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3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8	21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3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8	21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3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8	21

□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등의 모든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5	5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20	21

□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등의 모든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6	6
	완결성	0	2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21	22

□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등의 모든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0	7	7
	현지성	0	6	6
	완결성	0	0	0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0	23	23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1	2	3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7	20

□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4	4
	완결성	1	0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6	18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6	6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주정차 이동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주정차 이동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0	6	6
	현지성	1	5	6
	완결성	1	1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9	21

□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0	6	6
	현지성	1	4	5
	완결성	1	1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8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0	6	6
	현지성	2	5	7
	완결성	0	0	0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7	19	

□ 환경관리원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환경관리원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0	9	9
	현지성	0	4	4
	완결성	0	0	0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0	21	21

□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9	10
	현지성	0	4	4
	완결성	0	0	0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1	21	22

□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8	9
	현지성	0	4	4
	완결성	0	0	0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1	19	20	

□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8	9
	현지성	0	6	6
	완결성	0	0	0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1	24	25	

라. 문화체육

□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0	7	7
	완결성	2	0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23	25	

□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게임제공업 등 허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등 허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1	1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게임제공업 등 승계(폐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등 승계(폐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게임제공업 사후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사후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게임제공업 과징금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9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과징금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게임제공업 폐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게임제공업 폐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노래연습장업 등록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노래연습장업 등록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노래연습장업 변경, 승계, 폐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노래연습장업 변경, 승계, 폐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노래연습장업 과징금·과태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노래연습장업 과징금·과태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상영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상영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6	19	

□ 비디오통시청제공업 등록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비디오통시청제공업 등록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승계 및 폐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승계 및 폐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2	3	5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4	19

□ 출판사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출판사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불법간행물 수거·폐기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불법간행물 수거·폐기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과태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과태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5	19

□ 인쇄사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인쇄사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6	19

□ 인쇄사 신고필증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인쇄사 신고필증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6	19	

□ 인쇄사의 과태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인쇄사의 과태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2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4	19	

□ 여행업 등록 및 등록취소, 양수도 등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등록 및 등록취소, 양수도 등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6	20	

□ 여행업 보험가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보험가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6	20	

□ 여행업 여행계약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여행계약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5	19

□ 여행업 폐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폐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6	20

□ 여행업 검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검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4	5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5	20

□ 여행업 과태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1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여행업 과태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2	3	5
	현지성	0	1	1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4	19

마. 안전

□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안전모니터봉사단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0	7	7
	현지성	0	3	3
	완결성	1	0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1	19	20

□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0	7	7
	현지성	1	2	3
	완결성	1	0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합계	2	19	21

□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1	4	5
	완결성	1	0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합계	3	18	21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7	7
	완결성	1	0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1	20	21	

□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1	2	3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6	20	

□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1	2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4	19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2	3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1	2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4	19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소비유통단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소비유통단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0	3	3
	현지성	1	1	2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18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1	1	2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18	

□ 식품 등의 수거검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 등의 수거·검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1	2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1	16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4	19

□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7	21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7	21	

□ **공중위생업의 승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의 승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7	21

□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2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5	20

□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2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6	21	

□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1	2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7	21	

□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1	2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7	22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6	21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8	22	

□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1	2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6	21	

□ 이·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이·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3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8	21	

□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0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3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3	16	19
합계	5	14	19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3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1	1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3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0	0	0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2	0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0	1	1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8	9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0	0
	완결성	1	1	2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바. 사회복지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0	6	6
	완결성	1	0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1	1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5	16

□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8	23	

□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5	18	23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7	8
	행정효율성	1	2	3
	현지성	0	3	3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5	17	22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7	8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3	3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5	18	23

□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2	12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23	26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1	11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4	26	

□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0	2	2

□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5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1	11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1	1	2
	주민편의성 & 완결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4	26	

□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0	10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1	11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1	11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11	12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22	25	

□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13	1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5	27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9	9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3	3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3	25

□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7	8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2	24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4	20	24	

□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4	20	24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보장결정 및 통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결정 및 통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6	8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8	21	

□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아이돌봄 지원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7	8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19	21	

□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7	8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9	22	

□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7	8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19	21	

□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8	9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8	9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8	9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2	18	20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0	22	

□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19	21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2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19	21

□ 경로당 설치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7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설치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경로당 폐·휴지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폐·휴지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경로당 변경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변경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1	0	1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4	18	22	

□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9	22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1	1	2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7	20	

□ 경로당 양곡비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1	2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9	22

□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5	18

□ 기초연금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초연금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5	18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5	18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8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8	21	

□ 장애(아동) 수당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아동) 수당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장애인연금 지원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연금 지원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7	8
	현지성	0	3	3
	완결성	2	1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9	22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건축 협의 등)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5	18	

□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민간 협력 총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민간 협력 총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1	2	3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1	5	6
	완결성	2	0	2
	주민편의성 & 행정효율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20	24	

□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7	7
	완결성	2	1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21	24

□ 통합사례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9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합사례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7	7
	완결성	2	1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20	23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8	9
	현지성	1	3	4
	완결성	2	1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20	24	

□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0	3	3
	완결성	2	1	3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8	22	

사. 산업경제

□ 담배소매인의 지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의 지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7	20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18	20

□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8	8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18	20

□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6	19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3	19	22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0	22

□ 통산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0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통산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0	22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1	0	1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8	22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5	18

□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5	18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5	18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5	18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5	18

□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4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0	1	1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5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1	1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1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3	17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내부청소, 비정상운영신고 등)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3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18

□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1	1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4	18

□ **공중화장실 설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화장실 설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6	6
	행정효율성	2	3	5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6	20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4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1	23	

□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1	3	4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4	17	21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등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0	5	5
	현지성	0	3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9	22

□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3	4
	행정효율성	0	6	6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6	19	

□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0	4	4
	현지성	1	1	2
	완결성	2	1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4	18	

□ **축산농가 재해 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농가 재해 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7	7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1	0	1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8	22

□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4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4	15	19

□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4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5	18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5	6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7	20	

□ 유기동물 신고 접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유기동물 신고 접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6	7
	행정효율성	0	7	7
	현지성	0	4	4
	완결성	1	0	1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2	2
합계		2	21	23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0	1	1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3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1	1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3	18	

□ 건축신고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취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3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신고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취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0	0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3	18

□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0	0
	완결성	1	2	3
	주민편의성 & 현지성	3	2	5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1	0	1
합계		6	13	19

□ 소음측정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측정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3	14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확인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확인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소음·진동 개선명령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개선명령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조업정지명령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조업정지명령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1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2	2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소음규제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소음규제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1	4	5
	현지성	1	2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과태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과태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0	2	2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4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승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승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1	4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3	17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불법행위 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 불법행위 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0	0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2	5	7
	현지성	0	2	2
	완결성	3	1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건설폐기물 배출자 과태료 부과 징수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6〉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건설폐기물 배출자 과태료 부과 징수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1	1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행정효율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및 폐업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7〉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및 폐업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5	6
	현지성	0	0	0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5	18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8〉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1	6	7
	현지성	0	3	3
	완결성	2	2	4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완결성	0	1	1
합계	3	16	19	

□ 기업체 재해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59〉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체 재해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2	2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기업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0〉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4	4
	행정효율성	2	4	6
	현지성	0	0	0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공장(변경)등록(취소)**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1〉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공장(변경)등록(취소)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5	5
	행정효율성	1	3	4
	현지성	0	0	0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4	12	16

□ 기업체 일제조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2〉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체 일제조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2	3	5
	현지성	0	3	3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3	18

□ 기업현장방문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3〉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현장방문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2	3	5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기업애로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4〉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애로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2	3	5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 기업사후관리

- 본 기능에 관한 의견수렴결과, 읍·면·동의 사무로의 이양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기능은 주민편의성, 현지성 등의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65〉 기능재배분 판단 결과: 기업사후관리

구분		판단결과		응답빈도
		이양불가	이양가능	
판단기준	주민편의성	0	3	3
	행정효율성	2	3	5
	현지성	0	2	2
	완결성	3	2	5
	주민편의성 & 현지성	0	1	1
	주민편의성, 행정효율성, 현지성	0	1	1
합계		5	12	17

제5장

결론

제1절 기능배분

제2절 행정구역재설계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기능배분

1. 책임읍·동 기능배분의 개요

□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기능배분의 주요 기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집행기능 중심의 기능배분
- 주민의 신고·접수 등의 원인행위를 요구하는 행정 집행기능 중심의 기능배분
- 지역의 주요 산업(농축산 등)을 고려한 기능배분

□ 기능배분의 주요변화

- 책임읍은 총 263개 기능을 소관하며, 이중 213개 기능은 현행 조치원읍의 수행 기능임
 - 신규기능으로 문화체육분야의 기능 중 현장확인 필요한 기능을 소관기능으로 포함함
 - 신규기능 중 사회복지 분야 기능은 경로당 소모물품 지원 기능으로 현재 수행중인 기능일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의 분장사무 내역에 <삭제>로 표시되어 신규기능으로 제시함
 - 환원기능은 건설도시 분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기능으로 허가기능은 본청에서 일관된 법령기준을 적용하여 일괄 소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읍·면·동은 현장확인, 신고접수 등을 수행함
-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하는 기능(6개 기능): 건축허가 등에 관한 기능
 - 건축허가(6층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법 제11조, 제8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

□ 책임동과 책임읍의 기능배분 차이

○ 건설도시분야 기능배분 차이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건축물대장 생성, 분리결합, 재작성, 전환, 합병, 표시변경 및 정정, 소유자 정정, 건축물 지번(도로명주소 등) 변경, 말소, 등기축탁, 등·초본 발급 등

○ 산업경제분야 기능배분 차이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
- 축산농가 재해조사, 축산업 정기점검 및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 건축신고(취소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표 5-1〉 책임읍·동 기능배분변화 현황

공공 서비스 분야	책임읍				책임동			
	합계	현행유지	신규	환원	합계	현행유지	신규	환원
계	263	213	50	6	222	150	72	-
재무	3	3	-	-	3	3	-	-
민원	12	12	-	-	12	12	-	-
건설도시	76	76	-	6	49	27	22	-
문화체육	26	2	24		26	2	24	-
안전	29	29	-	-	29	29	-	-
복지	53	52	1	-	53	52	1	-
산업경제	64	39	25	-	50	25	25	-

2. 책임동 사무배분

□ 민원 분야 기능 (12개 기능)

- 주민등록 분야 소관 기능: 외국인 등록 등
- 부동산 분야 소관 기능: 실거래가 신고 접수, 부동산 중개업 관리
- 지적 분야 소관 기능: 도로명주소(상세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기초 조사 등

□ 행재정 분야 기능 (3개 기능)

- 부동산 관련 세정기능
 - 부동산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의 신고분 처리 및 감액결정, 비과세 감면 결정 등

□ 건설도시 분야 기능 (49개 기능)

- 도로관리 분야 소관 기능: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및 단속(고발) 등
- 자동차관리 분야 소관기능: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청소차량 등 관리 등
- 도시(계획)시설 분야 소관기능: 부설주차장관리, 공원관리, 체육시설관리, 가로청소 등
- 건축분야 소관기능: 건축관련 신고 및 수리, 건축물 감독, 위반건축물 조치 (사용제한, 고발 등) 등
- 경관관련 분야 소관기능: 옥외광고물 인허가 등

□ 문화체육 분야 기능 (26개 기능)

- 사업체 관리 분야 소관기능
 -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출판사, 인쇄

사, 여행업 등 사업체 신고·등록 접수·인허가 및 사후관리(행정처분 포함)

□ 안전분야 기능 (29개 기능)

- 재난안전 분야 소관기능: 재난안전 모니터링 및 예찰활동 지원, 재난관리지원원, 안전의식 캠페인 등
- 식품위생안전분야 소관기능:
 - 식품접객업 및 판매업,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 건강기능식품 등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식품등의 수거검사, 농수산물 안정성 조사 등
 - 영업신고(접수·수리) 영업자(사업자) 교육, 영업시설 조사 등

□ 사회복지분야 기능 (53개 기능)

- 소득기준 복지서비스 공급 기능:
 - 서비스 수급대상(긴급복지 등) 발굴·현장확인·수급결정·사후관리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관련 기능
 -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상담
- 수당지급 기능: 수당지급을 위한 신청 및 확인조사, 사후관리 등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생활안정수당 등 지급기능, 장애인자립지원,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등 수당지급을 위한 신청 및 확인조사 등
- 복지서비스(의료 및 사회복지) 공급기능
 - 의료수급자 조사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적정여부 결정, 임대주택신청자 소득 재산 조사,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아동돌봄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

-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능
 - 경로당 설치 및 운영(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소요물품 등 지원), 경로당 설치 신고접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및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등 관리
 - 권역내 복지허브화 관련 기능

□ 산업경제분야 기능 (50개 기능)

-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영업신고 접수 및 지도점검 등 행정처분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신고접수, 지도점검, 수질검사, 행정처분 등
-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련 영업신고접수, 지도점검, 소음측정, 행정처분 등
-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관련 영업신고접수,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 직업소개소, 축산물판매 등 개업·폐업 등록 및 관리,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기업체 재해피해 조사 및 확인서발급, 기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관리 등 사후 관리
-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점검, 행정처분 등

〈표 5-2〉 책임동 특화사무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재무	1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현행유지
	2	•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현행유지
	3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현행유지
민원	1	•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현행유지
	2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민원	3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현행유지	
	4	•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현행유지	
	5	• 외국인 토지 관리	현행유지	
	6	• 부동산계약서 검인	현행유지	
	7	•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행유지	
	8	•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현행유지	
	9	•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현행유지	
	10	•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현행유지	
	11	•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현행유지	
	12	•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현행유지	
	건설도시	1	•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현행유지
		2	•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현행유지
3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현행유지	
4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현행유지	
5		•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현행유지	
6		• 도시계획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현행유지	
7		• 시도 도로점용 허가	현행유지	
8		• 시도 도로점용 준공	현행유지	
9		•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10		•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현행유지	
11		•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현행유지	
12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현행유지	
13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현행유지	
14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15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현행유지	
16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현행유지	
17		•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현행유지	
18		•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현행유지	
19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건설도시	20	•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현행유지
	21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현행유지
	22	•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현행유지
	23	•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현행유지
	24	• 환경관리원 관리	현행유지
	25	•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현행유지
	26	•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현행유지
	27	•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현행유지
	28	• 건축신고	신규
	29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수리	신규
	30	•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신규
	31	• 공작물 축조 신고수리	신규
	32	• 건축물 조사	신규
	33	• 건축물 토지 굴착 조치	신규
	34	• 신고대상 건축물 감독	신규
	35	• 위반건축물 조치	신규
	36	• 건축행정업무 검사	신규
	37	• 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38	•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신규
	39	• 위반건축물 단전·단수 조치	신규
	40	• 위반건축물 문화시설 공급 제한	신규
	41	• 위반건축물 사용제한	신규
	42	• 위반건축물 행위자 고발	신규
	43	• 위반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44	• 위반건축물 공개공지 지도점검	신규
	45	• 위반건축물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신규
	46	• 옥외 광고물 인·허가	신규
	47	•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	신규
48	• 옥외 광고물 허가취소	신규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건설도시	49	•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신규
문화체육	1	•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현행유지
	2	•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현행유지
	3	• 게임제공업 등 허가	신규
	4	• 게임제공업 등 승계(폐업)	신규
	5	• 게임제공업 사후관리	신규
	6	• 게임제공업 과징금 부과 징수	신규
	7	• 게임제공업 폐쇄	신규
	8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규
	9	• 노래연습장업 변경, 승계, 폐업	신규
	10	• 노래연습장업 과징금·과태료	신규
	11	• 상영신고	신규
	12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규
	13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승계 및 폐업	신규
	14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신규
	15	• 출판사 신고	신규
	16	• 불법간행물 수거·폐기	신규
	17	•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18	• 인쇄사 신고	신규
	19	• 인쇄사 신고필증	신규
	20	• 인쇄사의 과태료	신규
	21	• 여행업 등록 및 등록취소, 양수도 등	신규
	22	• 여행업 보험가입	신규
	23	• 여행업 여행계약	신규
	24	• 여행업 폐쇄,	신규
	25	• 여행업 검사	신규
	26	• 여행업 과태료	신규
안전	1	•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안전	2	•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현행유지
	3	•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현행유지
	4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현행유지
	5	•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현행유지
	6	•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현행유지
	7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행유지
	8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행유지
	9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소비유통단계)	현행유지
	10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현행유지
	11	• 식품 등의 수가검사	현행유지
	12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현행유지
	13	•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14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현행유지
	15	• 공중위생업의 승계	현행유지
	16	•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현행유지
	17	•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현행유지
	18	•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19	•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현행유지
	20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현행유지
	21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현행유지
	22	•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현행유지
	23	• 아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현행유지
	24	•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현행유지
	25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26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현행유지
	27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현행유지
	28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현행유지
	29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현행유지
	복지	1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복지	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현행유지
	3	•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현행유지
	4	•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현행유지
	5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현행유지
	6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현행유지
	7	•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현행유지
	8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9	•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0	•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1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2	•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3	•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4	•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5	•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현행유지
	16	•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7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현행유지
	18	•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현행유지
	19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현행유지
	20	•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현행유지
	2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2	•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3	•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4	•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현행유지
	25	•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6	•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7	•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8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현행유지
	29	•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복지	30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현행유지
	31	• 경로당 설치 신고	현행유지
	32	• 경로당 폐휴지 신고	현행유지
	33	• 경로당 변경 신고	현행유지
	34	•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행유지
	35	•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신규
	36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현행유지
	37	• 경로당 양곡비 지원	현행유지
	38	•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39	• 기초연금 지원	현행유지
	40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현행유지
	41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현행유지
	42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현행유지
	43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현행유지
	44	• 장애(아동) 수당 지원	현행유지
	45	• 장애인연금 지원	현행유지
	4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행유지
	47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건축 협의 등)	현행유지
	48	•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연간 협력 총괄	현행유지
	49	•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현행유지
	50	•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행유지
	51	• 통합사례관리	현행유지
	52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현행유지
53	•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현행유지	
산업경제	1	• 담배소매인의 지정	현행유지
	2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현행유지
	3	•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현행유지
	4	•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현행유지
	5	•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산업경제	6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현행유지
	7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현행유지
	8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현행유지
	9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현행유지
	10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행유지
	11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행유지
	12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현행유지
	13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내부청소, 비정상운영신고 등)	현행유지
	14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현행유지
	15	•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행유지
	16	• 소음측정	신규
	17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규
	18	•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확인	신규
	19	• 소음·진동 개선명령	신규
	20	• 조업정지명령	신규
	21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신규
	22	• 소음규제	신규
	23	•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24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규
	25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승계	신규
	26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불법행위 단속	신규
	27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신규
	28	•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29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규
	30	•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신규
	31	• 건설폐기물 배출자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32	•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현행유지
	33	• 공중화장실 설치	현행유지
	34	•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산업경제	35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현행유지
	36	•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37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 입력, 개인정보 처리	현행유지
	38	•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39	•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현행유지
	40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현행유지
	41	• 유기동물 신고 접수	현행유지
	42	•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및 폐업	신규
	43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신규
	44	• 기업체 재해조사	신규
	45	• 기업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	신규
	46	• 공장(변경)등록(취소)	신규
	47	• 기업체 일제조사	신규
	48	• 기업현장방문	신규
	49	• 기업애로관리	신규
	50	• 기업사후관리	신규

3. 책임음 사무배분

□ 민원 분야 기능 (12개 기능: 도농통합형 책임동 기능과 동일)

- 주민등록 분야 소관 기능: 외국인 등록 등
- 부동산 분야 소관 기능: 실거래가 신고 접수, 부동산 중개업 관리
- 지적 분야 소관 기능: 도로명주소(상세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기초 조사 등

□ **행재정 분야 기능 (3개 기능: 도농통합형 책임동 기능과 동일)**

- 부동산 관련 세정기능
 - 부동산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의 신고분 처리 및 감액결정, 비과세 감면 결정 등

□ **건설도시 분야 기능 (76개 기능)**

- 도로관리 분야 소관 기능: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 및 단속(고발) 등
- 자동차관리 분야 소관기능: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청소차량 등 관리 등
- 도시(계획)시설 분야 소관기능: 부설주차장관리, 공원관리, 체육시설관리, 가로청소 등
- 건축분야 소관기능: 건축관련 신고 및 수리, 건축물 감독, 위반건축물 조치 (사용제한, 고발 등) 등
- 경관관련 분야 소관기능: 옥외광고물 인허가 등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건축물대장 생성, 분리결합, 재작성, 전환, 합병, 표시변경 및 정정, 소유자 정정, 건축물 지번(도로명주소 등) 변경, 말소, 등기축탁, 등·초본 발급 등

□ **문화체육 분야 기능 (26개 기능: 도농통합형 책임동 기능과 동일)**

- 사업체 관리 분야 소관기능
 -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출판사, 인쇄사, 여행업 등 사업체 신고·등록 접수·인허가 및 사후관리(행정처분 포함)

□ **안전분야 기능 (29개 기능: 도농통합형 책임동 기능과 동일)**

- 재난안전 분야 소관기능: 재난안전 모니터링 및 예찰활동 지원, 재난관리지원원, 안전의식 캠페인 등

○ 식품위생안전분야 소관기능:

- 식품접객업 및 판매업,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 건강기능식품 등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식품등의 수거검사, 농수산물 안정성 조사 등
- 영업신고(접수·수리) 영업자(사업자) 교육, 영업시설 조사 등

□ 사회복지분야 기능 (53개 기능: 도농통합형 책임동 기능과 동일)

○ 소득기준 복지서비스 공급 기능:

- 서비스 수급대상(긴급복지 등) 발굴·현장확인·수급결정·사후관리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관련 기능
-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상담

○ 수당지급 기능: 수당지급을 위한 신청 및 확인조사, 사후관리 등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생활안정수당 등 지급기능, 장애인자립지원,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등 수당지급을 위한 신청 및 확인조사 등

○ 복지서비스(의료 및 사회복지) 공급기능

- 의료수급자 조사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적정여부 결정, 임대주택신청자 소득 재산 조사,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아동돌봄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

○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능

- 경로당 설치 및 운영(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소요물품 등 지원), 경로당 설치 신고접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및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등 관리
- 권역내 복지허브화 관련 기능,

□ 산업경제분야 기능 (50개 기능)

-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영업신고 접수 및 지도점검 등 행정처분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신고접수, 지도점검, 수질검사, 행정처분 등
-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련 영업신고접수, 지도점검, 소음측정, 행정처분 등
-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관련 영업신고접수,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 직업소개소, 축산물판매 등 개업·폐업 등록 및 관리,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기업체 재해피해 조사 및 확인서발급, 기업체 현장방문 및 애로관리 등 사후 관리
-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점검, 행정처분 등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
- 축산농가 재해조사, 축산업 정기점검 및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
- 건축신고(취소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표 5-3〉 책임읍 특화사무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재무	1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현행유지
	2	•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현행유지
	3	•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현행유지
민원	1	•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현행유지
	2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현행유지
	3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현행유지
	4	•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현행유지
	5	• 외국인 토지 관리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민원	6	• 부동산계약서 검인	현행유지
	7	•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행유지
	8	•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현행유지
	9	•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현행유지
	10	•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현행유지
	11	•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현행유지
	12	•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현행유지
건설도시	1	•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간판표시 계획서 소관업무 포함)	현행유지
	2	•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	현행유지
	3	•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현행유지
	4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현행유지
	5	•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현행유지
	6	•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현행유지
	7	•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8	•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행유지
	9	•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현행유지
	10	• 주민숙원사업(20백만원이상~50백만원미만)	현행유지
	11	•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현행유지
	12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현행유지
	13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처리	현행유지
	14	• 불법건축물 현장계도	현행유지
	15	• 불법건축물 발생보고	현행유지
	16	• 건축신고	현행유지
	17	• 건축물 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현행유지
	18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현행유지
	19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현행유지
	20	• 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연장신고	현행유지
	21	• 건축물 철거 신고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건설도시	22	• 건축물 멸실 신고	현행유지
	23	• 공작물 축조 신고	현행유지
	24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현행유지
	25	•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현행유지
	26	•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현행유지
	27	•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현행유지
	28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현행유지
	29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현행유지
	30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현행유지
	3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현행유지
	32	• 건축물표시 변경	현행유지
	33	• 건축물표시 정정	현행유지
	34	• 건축물소유자 변경	현행유지
	35	• 건축물소유자 정정	현행유지
	36	• 건축물 지번 변경	현행유지
	37	• 건축물 지번 정정	현행유지
	38	•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현행유지
	39	•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현행유지
	40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현행유지
	41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현행유지
	42	•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현행유지
	43	•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현행유지
	44	•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현행유지
	45	•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현행유지
	46	• 시도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현행유지
	47	• 도시계획도로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현행유지
	48	• 농어촌도로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현행유지
	49	• 시도 도로점용 허가	현행유지
	50	• 시도 도로점용 준공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건설도시	51	•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52	•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현행유지
	53	•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현행유지
	54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허가	현행유지
	55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현행유지
	56	•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57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현행유지
	58	•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현행유지
	59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현행유지
	60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현행유지
	61	•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62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현행유지
	63	•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현행유지
	64	•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현행유지
	65	•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현행유지
	66	•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현행유지
	67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현행유지
	68	•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현행유지
	69	•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현행유지
	70	• 주정차 이동단속	현행유지
	71	•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현행유지
	72	•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현행유지
	73	• 환경관리원 관리	현행유지
	74	•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현행유지
	75	•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현행유지
	76	•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현행유지
문화체육	1	•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현행유지
	2	•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현행유지
	3	• 게임제공업 등 허가	신규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문화체육	4	• 게임제공업 등 승계(폐업)	신규	
	5	• 게임제공업 사후관리	신규	
	6	• 게임제공업 과징금 부과 징수	신규	
	7	• 게임제공업 폐쇄	신규	
	8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규	
	9	• 노래연습장업 변경, 승계, 폐업	신규	
	10	• 노래연습장업 과징금·과태료	신규	
	11	• 상영신고	신규	
	12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규	
	13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승계 및 폐업	신규	
	14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신규	
	15	• 출판사 신고	신규	
	16	• 불법간행물 수거·폐기	신규	
	17	•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18	• 인쇄사 신고	신규	
	19	• 인쇄사 신고필증	신규	
	20	• 인쇄사의 과태료	신규	
	21	• 여행업 등록 및 등록취소, 양수도 등	신규	
	22	• 여행업 보험가입	신규	
	23	• 여행업 여행계약	신규	
	24	• 여행업 폐쇄,	신규	
	25	• 여행업 검사	신규	
	26	• 여행업 과태료	신규	
	안전	1	•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현행유지
		2	•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현행유지
		3	•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현행유지
4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현행유지	
5		•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안전	6	•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현행유지	
	7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행유지	
	8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행유지	
	9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소비유통단계)	현행유지	
	10	•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현행유지	
	11	• 식품 등의 수거검사	현행유지	
	12	•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현행유지	
	13	•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14	•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현행유지	
	15	• 공중위생업의 승계	현행유지	
	16	•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현행유지	
	17	•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현행유지	
	18	•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19	•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현행유지	
	20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현행유지	
	21	•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현행유지	
	22	•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현행유지	
	23	• 아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현행유지	
	24	•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현행유지	
	25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26	•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현행유지	
	27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현행유지	
	28	•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현행유지	
	29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현행유지	
	복지	1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현행유지
		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지원	현행유지
		3	•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현행유지
		4	•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현행유지
		5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사례관리)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복지	6	• 의료급여사업(수급권자 자격관리)	현행유지
	7	•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현행유지
	8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9	• 기초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0	•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1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2	• 우선돌봄차상위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3	• 차상위자활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4	• 차상위장애인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5	•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조사	현행유지
	16	• 한부모가족 신청 및 확인조사	현행유지
	17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현행유지
	18	• 초·중등교육비 소득재산조사	현행유지
	19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조사	현행유지
	20	• 임대주택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등	현행유지
	2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2	•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3	•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4	•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현행유지
	25	• 양육수당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6	• 영유아보육료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7	• 유아학비 보장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28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현행유지
	29	•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현행유지
	30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적정여부 결정	현행유지
	31	• 경로당 설치 신고	현행유지
	32	• 경로당 폐휴지 신고	현행유지
	33	• 경로당 변경 신고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복지	34	•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행유지
	35	•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신규
	36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현행유지
	37	• 경로당 양곡비 지원	현행유지
	38	•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 결정 및 통지	현행유지
	39	• 기초연금 지원	현행유지
	40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현행유지
	41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부부, 월세)	현행유지
	42	• 장애인생활안정수당 지원(중증장애인 월동비)	현행유지
	43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공적자료 조사	현행유지
	44	• 장애(아동) 수당 지원	현행유지
	45	• 장애인연금 지원	현행유지
	4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행유지
	47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건축 협의 등)	현행유지
	48	•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민간 협력 총괄	현행유지
	49	•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홍보 등) 및 연계	현행유지
	50	•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행유지
	51	• 통합사례관리	현행유지
	52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현행유지
	53	•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현행유지
산업경제	1	• 담배소매인의 지정	현행유지
	2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현행유지
	3	•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현행유지
	4	•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현행유지
	5	•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행유지
	6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현행유지
	7	•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현행유지
	8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현행유지
	9	• 가족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산업경제	10	•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현행유지
	11	•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현행유지
	12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현행유지
	13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현행유지
	14	•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현행유지
	15	•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행유지
	16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설치면제, 폐쇄신고	현행유지
	17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행유지
	18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행유지
	19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현행유지
	20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내부청소, 비정상운영신고 등)	현행유지
	21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현행유지
	22	•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행유지
	23	•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현행유지
	24	• 공중화장실 설치	현행유지
	25	•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현행유지
	26	•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현행유지
	27	•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행유지
	28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	현행유지
	29	•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현행유지
	30	•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	현행유지
	31	• 축산농가 재해 조사	현행유지
	32	•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현행유지
	33	•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현행유지
	34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현행유지
	35	• 유기동물 신고 접수	현행유지
	36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현행유지
	37	•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현행유지

공공 서비스 분야	연번	사 무 명	비고
산업경제	38	• 건축신고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취소	현행유지
	39	• 건축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현행유지
	40	• 소음측정	신규
	41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규
	42	•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확인	신규
	43	• 소음·진동 개선명령	신규
	44	• 조업정지명령	신규
	45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신규
	46	• 소음규제	신규
	47	•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48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규
	49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승계	신규
	50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불법행위 단속	신규
	51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신규
	52	•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53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규
	54	•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신규
	55	• 건설폐기물 배출자 과태료 부과 징수	신규
	56	• 직업소개소 (변경)등록 및 폐업	신규
	57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신규
	58	• 기업체 재해조사	신규
	59	• 기업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	신규
	60	• 공장(변경)등록(취소)	신규
	61	• 기업체 일제조사	신규
	62	• 기업현장방문	신규
	63	• 기업애로관리	신규
	64	• 기업사후관리	신규

제2절 행정구역재설계

1. 구역재설계 원칙

가. 일반원칙

□ 종합적 고려사항

- 주민편익
 - 생활권의 일치 여부
- 지역개발
 - 개발권역과의 합치 여부
 - 개발전망 및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 지리적 여건
 - 지역, 지세, 교통 등
- 역사적 전통성
 - 문화, 풍속, 생업, 지역주민화합 등
- 행·재정 효과
 - 규모의 적정화
 - 재정능력

□ 지방자치법 규정

-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함(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2항)
- ‘읍’은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인 지역(지방자치법 제 7조 제3항)
 - 시가지 구성지역내 거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이상이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전체가구의 40%이상인 경우 읍을 설치할 수 있음

- 인구 2만명 미만의 경우에는 군청 소재지의 면 또는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1개 면을 읍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면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면행정 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함
 -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1개의 행정면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동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함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규칙 제4조 1호, 2호)
 -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 면·동의 설치 승인 기준
 - 면의 설치 승인 기준은,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임
 - 동의 설치 승인 기준은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지상경계는 독,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법률 제65조 제1항)

나. 세종특별자치시 특화원칙

□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구역설정의 주요 기준

- 공간적 기준: 지리적 접근성(지세, 교통 등)
- 주민의 지역정체성기준: 주민생활권(주민편익), 역사적전통성(풍속, 문화, 생업) 등
- 행·재정 효율성 기준: 주민편익, 지역개발권역과의 합치 여부, 개발전망 및 타지역에 대한 영향, 재정효율성, 규모의 적정성 등

□ 세종특별자치시는 계획도시로서 자연발생도시의 구역경계 기준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자연발생도시의 구역경계 조정기준 중 역사적 전통성, 지리적 여건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 구역경계조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과 주민편익, 지역의 주요산업, 행·재정적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함

2. 구역재설계

가. 구역재설계 대안 1

□ 지역특성 및 상호접근성 기준 적용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을 3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책임읍·동을 제시함
- 현재 일부 실시 중인 책임읍·동(조치원읍·아름동)의 공간적·사회적 규모를 고려하여 지리적 접근성, 지역 정체성, 행재정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 책임읍 : 조치원읍

기준	조치원읍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지리적 접근성	○	○	△	○	○
지역 정체성	○	○	○	○	○
행재정 효율성	○	○	○	○	○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 책임동 : 아름동

기준	아름동	고은동	중촌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	가람동	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동	해밀동	장군면	연기면
지리적 접근성	○	○	○	○	○	○	○	△	△	△	○	○	○	○	○	△	△
지역 정체성	○	○	○	○	○	○	○	○	○	○	○	○	○	○	○	○	○
행재정 효율성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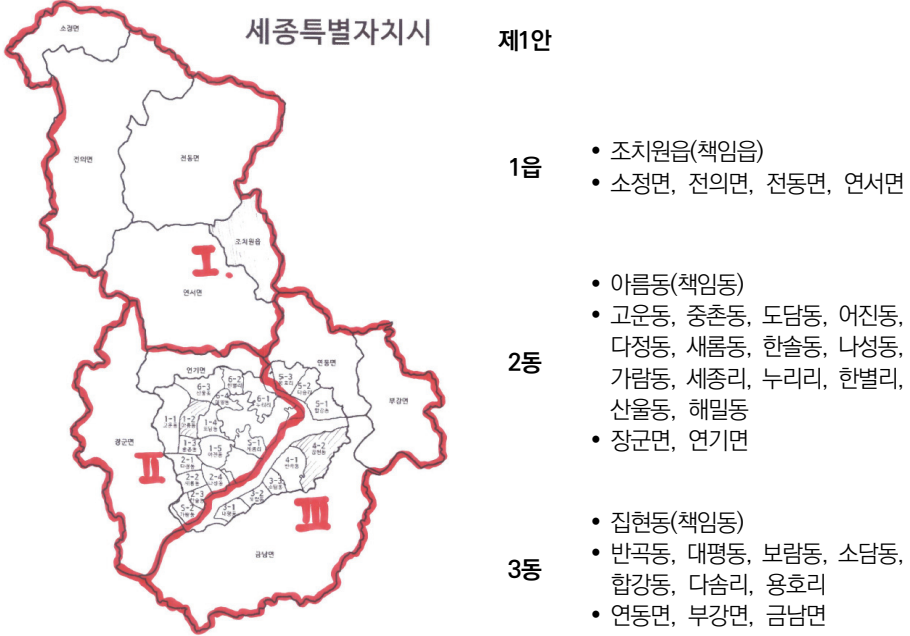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 책임동 : 집현동

기준	집현동	반곡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합강동	다솜리	용호리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지리적 접근성	○	○	△	○	○	△	△	△	△	△	△
지역 정체성	○	○	○	○	○	△	△	△	△	△	△
행재정 효율성	○	○	○	○	○	○	○	○	○	○	○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그림 5-1〉 세종특별자치시 구역개편 대안 1



나. 구역재설계 대안 2

□ 상호접근성 및 지역규모 기준 적용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을 4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책임읍·동을 제시함
- 지리적접근성(지세, 교통)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책임읍동의 지역정체성과 행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음

- 책임읍 : 조치원읍

기준	조치원읍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지리적 접근성	○	△	△	○	○
지역 정체성	○	○	○	○	○
행재정 효율성	○	○	○	○	○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 책임동 : 아름동

기준	아름동	고은동	중촌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	가림동	세종리	장군면
지리적 접근성	○	○	○	○	○	○	○	△	○	△	○	○
지역 정체성	○	○	○	○	○	○	○	○	○	○	○	△
행재정 효율성	○	○	○	○	○	○	○	○	○	○	○	○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 책임동 : 보람동

기준	보람동	반곡동	대평동	집현동	소담동	금남면
지리적 접근성	○	○	○	△	○	○
지역 정체성	○	○	○	○	△	△
행재정 효율성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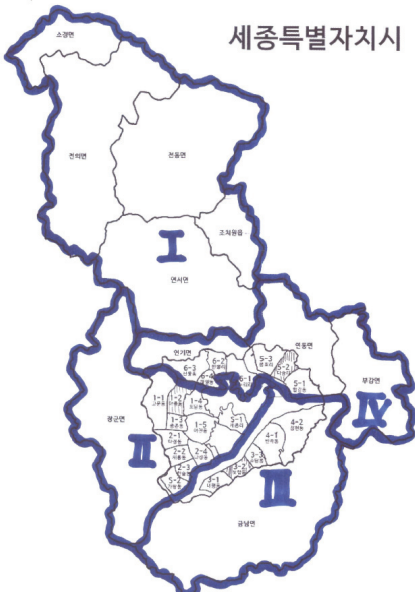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 책임동 : 다솜동(다솜리)

기준	다솜동	합강동	용호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동	해밀동	장군면	연기면	부강면
지리적 접근성	○	○	○	△	△	△	△	○	△	○
지역 정체성	○	○	○	○	○	○	○	△	△	△
행재정 효율성	○	○	○	○	○	○	○	○	○	○

○ : 적합, △ : 보통, × : 부적합

〈그림 5-2〉 세종특별자치시 구역개편 대안 2



제2안

1읍

- 조치원읍(책임읍)
-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2동

- 아람동(책임동)
- 고운동, 중촌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 가람동, 세종리
- 장군면,

3동

- 보람동(책임동)
- 반곡동, 대평동, 집현동, 소담동
- 금남면

4동

- 다솜리(책임동)
- 합강동, 용호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동, 해밀동
-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연구의 한계

- 당초 연구 목표와 범위를 책임읍동의 확대 개편에 맞추었음
 - 행정 효율성의 확보 측면에서 책임읍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책임읍동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일선 행정기관의 다양한 모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다양한 환경 요인 등을 반영한 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부족함
 - 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라는 특성상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
 - 읍면동의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인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
-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읍면동 현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미흡함
 -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읍면동 공무원과의 인터뷰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기능과 관련된 조사표 조사만을 실시함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연구의 목표와 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함
 - 책임읍동의 확대 개편 뿐만 아니라 책임읍동의 폐지도 고려하여야 함
 - 행정효율, 주민편의,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주민 화합과 공동체성,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 읍면동제의 도입, 행정구의 설치 등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 국가의 지방자치 정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세종시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
 -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직

접 대민행정서비스를 주관하고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읍면동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 중심 기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세종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시대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세종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주민참여의식 수준의 향상,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의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중심 일선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함

- 김선희·김현준·김나연 (2020). 공공서비스 지불의사는 공공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인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선택인가?, 한국행정학보. 54(2): 339-377.
- 김성홍 (2006). 공공서비스품질 구성요인과 측정모형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7(3): 3-28.
- 문신용·윤기찬 (2007).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관한 통합적 분석모형의 구성 및 적용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259-284.
- 박용성·홍길표·이병철 (2020). 공공부문의 고객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연구: 법무부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서비스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보. 19(2): 93-119.
- 송건섭 (2004).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적용: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6(3): 527-550.
- 유 훈(2007) 정책집행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재필·이시경 (2009).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발, 한국공공관리학보. 23(1): 1-32.
- 한승주·최홍석 (2015).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책임성의 변화 탐색: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한국정책학회보. 24(4): 253-276.
- Davis, H. L. (1970). Dimensions of Marital Roles in Consum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7(2): 168-177.
- Friedlander, W. & Apte, R. (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5th ed., Prentice-Hall.
- Grönroos, C. (1990). Service management and Marketing: Managing the moment of truth in service competition,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Jones, B. (1981). Assessing the Products of Government: What Gets Distributed?. *Policy Studies Journal*. 9(7): 963-971.
- Lipsky, M. (1980). *Street 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eters, B. G.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Roth, G. (1987).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안전부 www.mois.go.kr